

종합감사

감 사 결 과 보 고 서

— ○○○○○○○원 종합감사 —

2015. 6.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1
1. 감사배경 및 목적.....	1
2. 감사대상 기관 및 범위.....	1
3. 감사 중점사항.....	1
4. 감사기간 및 인원.....	1
5. 종합감사를 통한 경영환경 분석.....	2
II. 감사대상 기관 주요 현황.....	2
1. 조직 및 인력.....	2
2. 2015년 연구 현황.....	3
3. 2014년 연구 실적.....	3
III. 감사결과.....	4
1. 총 평.....	4
2. 지적사항 총괄.....	5
3. 지적사항 요약.....	5
IV.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10
1. 행정상·재정상·신분상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10
2. 현지조치사항 일람표.....	10
3. 모범사례.....	11
V. 기타사항.....	17
1. 향후 처리계획 및 특기사항.....	17
2. 종합감사 총평 및 마감회의.....	17

I .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이번 감사는 ○○○○○○원(이하 “○○원” 이라한다.)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업무처리의 합법성과 합리성 및 합목적성 그리고 연구활동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를 시정·지도하고, 불합리하거나 비능률적인 부분을 개선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 미래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2. 감사대상 기관 및 범위

○○원의 3개실(2014년도 3실 1부)에 대하여 전년도 감사수감일 이후부터 감사일까지 주요사업추진과 연구활동 및 자산·회계 관리의 적정성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였다.

3. 감사 중점사항

이번 감사는 ○○원의 주요 정책 및 사업추진의 적정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법성,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에 대하여 감사하였으며, 특히 연구계획 및 연구과제선정의 적정성, 연구과제 수행 및 관리의 적정성, 연구와 관련한 각종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국내외 자료수집 활동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모범사례 발굴에도 적극 노력하였다.

4. 감사기간 및 인원

2015. 5. 27.부터 같은 해 5. 29.까지 예비감사를 실시하고, 2015. 6. 1. 부터 같은 해 6. 5.까지 5일간 6명의 감사인력(연 인원 30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하였다. 이후 감사실의 내부검토 과정을 거쳐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5. 종합감사를 통한 경영환경 분석

○○원 종합감사를 통하여 주요사업추진내용과 연구활동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위험요인 도출 및 강점·약점 파악 등 경영환경을 분석하여 미래위험에 대비하고자 함.

○ ○○원 종합감사를 통한 경영환경 분석

경영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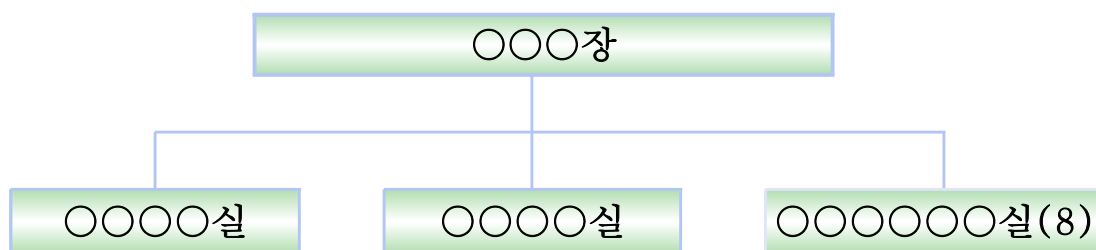
구분	강점	약점
내부	■ 국내 유일 공간정보 전문 연구기관 ■ 민간 기술지원 및 관련 네트워크 보유 ■ 다년간 국토 관련 연구성과 보유 ■ 수익창출 가능 지적재산권 보유	■ 전문 연구 인프라 부족(인력, 교류, 역량) ■ 공간정보 분야 수익창출 부족 ■ 인력대비 과도한 업무수행 ■ 연구성과 관리 시스템 미흡
외부	■ 지적에서 공간정보로 영역 확대 ■ 국책연구과제 수탁기회 확대 ■ 위치정보기반 서비스 니즈 증대	■ 타 연구원 대비 낮은 위상 ■ 지적측량 시장 개방 가속화 ■ FTA 발효에 따른 외국기술 국내진입

기회	공간정보 정책개발 및 융·복합 기술개발로 R&D 수입창출 기반 구축
위험	공간정보 부문 민간 기술력의 급속한 성장으로 대외 경쟁력 약화

II. 감사대상 기관 주요 현황

1. 조직 및 인력

○ 조 직: 3실(○○○○실, ○○○○실, ○○○○○○실) _ 2015년



* 2014년도 조직(○○○○실, ○○○○실, ○○○○○실, ○○○○부)

○ 인 력

(2015. 6. 5. 현재)

(단위: 명)

구 분	정 원	현 원	증·감	비 고
합 계	56	54	△2	○ 국토정보직: 10명 ○ 기획경영직: 4명 ○ 연구직: 33명 ○ 기능직·보조인력: 7명
○○○○○실	19	18	△1	
○○○○○실	20	16	△4	
○○○○○○○실	17	20	3	

2. 2015년 연구 현황

구 분	건수	연구과제명	비고
합 계	28		
제안과제	8	LX 경영수익성 분석 등	
경영과제	9	스마트도시 구축 공간데이터 통합기술 개발 등	
정책과제	1	국가공간정보 표준정책지원 연구	
수탁과제	9	도로명주소 활용 전략분야 조사·분석 등	전년이월 7건 미포함
전체위탁과제	1	연속지적도 관리체계 개편 방안 연구	

3. 2014년 연구실적

연구실적 56건: 기본 6건 / 정책 23건 / 위탁 7건 / 수탁 20건



Ⅲ. 감사결과

1. 총 평

○○○○○○○원 3실(2014년도 3실 1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적으로 적정하였다.

「국가 공간정보 R&D를 선도하는 글로벌 HUB 연구기관」의 비전과 「공간정보 연구개발 기능 강화로 선도적 연구성과 창출」이란 전략목표를 바탕으로 “공간정보 정책연구 선도”, “융·복합 기술연구 활성화”, “연구성과 확산체계 구축”을 주요 전략방향으로 설정하고 공간정보 융합의 시대에 걸 맞는 다양한 영역의 연구를 수행하여 국가의 건강한 공간정보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전 직원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문별 주요성과로는 연구개발 제도 관련 규정의 제·개정으로 연구원의 선진화 기반을 마련하였고,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연구개발사업 우수평가”, “KLIS 소프트웨어 인증기관 선정”으로 공간정보 분야 선도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 하였으며, 학술지인 「地籍」이 “등재학술지”로 승격 되었고, 미취업자의 취업과정인 공간정보 아카데미 사업을 추진하여 정부정책을 적극 반영하는 등 공간정보연구의 “First Mover”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다만 종합감사 결과 ○○○○○○○원에서는 「2014년도 종합감사 지적 사항 처리 소홀」 등 14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였다. 이번 종합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연구개발 관련 각종 규정 및 문서 지시사항 등에 대하여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명, 원)

구분	계	행정상조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조치			현지 처분	모범 사례
		통보	시정	개선	권고	회수	반환	증징 계	경징계	문책		
건수	14 (18)	6	1		5					2 (주의 3명)	4	2
금액	134,378,600		자산등록 134,160,000			218,600						

※ 총괄()은 현지처분을 포함한 숫자임.

3. 지적사항 요약

1

2014년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 소홀

< 요약 >

「감사기준시행세칙」 제35조(감사결과의 조치) 제1항~제3항

2014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또는 2개월 이내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하였다. 그런데도 2건은 처리기한을 42~129일을 초과하여 보고하였고, 1건은 감사일 현재까지 미집행 사유나 집행경위 등에 대한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처리를 하지 않고 있음.

2

외부강의·회의 등에 관한 사항

< 요약 >

「대한지적공사 임직원행동강령」 제36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1.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소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총32회에 걸쳐 외부강의·회의 등을 참석하면서 개정된 내용을 모른 채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를 소홀히 하였음.
2. 외부강의·회의 등 참석 직원 근태처리 부적정: 총13회에 걸쳐 외부강의·회의 등에 참석하면서 “외출(2명/6회), 근태 미처리(2명/2회), 여비 있는 일반출장(3명/5회) 처리를 하는 등 근태처리를 소홀히 하였음.
3. 외부강의·회의 등 사장 승인 사항 승인 누락: 연간 12회를 초과하거나 누적 대가금액이 3백만 원을 초과하는 외부강의·회의 등에 참석하면서 사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음.

< 요약 >

「연구개발규칙」제18조(연구진 구성)

연구진의 신규과제 업무분담 내역, 기존과제 수행현황과 전체 연구인력 배분현황, 연구인력의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연구진을 구성하여야 하는데도, 2015년도 연구원별 연구과제 참여비율, 과제수행 건수를 분석해본 결과 참여비율은 최소 10%에서 최대 172%(평균 77.9%), 과제수행 건수는 최소 1건에서 최대 5건(평균 3.1건) 까지 편차(공백)가 있는 등 2015년도 연구과제별 연구진을 부적정하게 구성하였음.

< 요약 >

「연구개발규칙」제76조 (전문가 명부 구축) 제1항, 「인재정보 등록 및 관리시스템 운영지침」제4조 (외부전문가 등록기준) 제1항 및 제5조 (외부전문가 인재등록), 「계약사무처리규칙」제29조 (견적서에 의한 가격결정) 제4항

공동연구원 선정 시 공사 인재풀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을 연구책임자의 주관에 의하여 임의로 선정하였으며, 계약 금액이 3960만 원 이면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의계약 하여야 함에도 개별적으로 수의계약 하였음.

< 요약 >

「자산관리규칙」제8조(취득) 제1항, 제10조(무형고정자산의 평가) 제1항 및 「연구개발규칙」제99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제5항

연구과제 수행에 따라 구축된 시스템은 공사의 예산을 투입하여 개발된 공사의 자산으로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에 등록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나,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구과제로 개발된 “스마트 재해관리 시스템” 외 3개 시스템 134,160,000원에 대하여 공사의 자산으로 등록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음.

6

소그룹 연구 활동 관리 소홀

< 요 약 >

「소그룹 연구 활동」 지원계획[○○○○○실-200(2011. 1. 27.)] 수립 시행

연구과제 멘토의 멘토링 실적, 연구자료, 기자재, S/W 등 지원 실적이 없으며, 특히 ○○원에서 현재 관리하는 소그룹 연구활동(CoP)은 없는 상태이고 기존에 2011. 3. 5. 개설된 소그룹 연구활동(CoP)은 2013. 5. 3. 이후 현재까지 활동 기록이 전혀 없는 등 소그룹 연구활동 지원 및 관리가 소홀함.

7

일상감사 의뢰 소홀

< 요 약 >

「감사기준시행세칙」제49조(일상감사의 범위)

감사기준시행세칙 제49조 제1항에 일상감사 의뢰대상을 정하고 있으나 ‘연도별 연구개발 계획 및 2015년 사업계획(안)’ 등 계약체결 및 방침 수립 시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고 최종 결재(총5건) 받는 등 일상감사 의뢰를 소홀히 함.

8

특근매식비 예산집행 부적정

< 요 약 >

「대한지적공사임직원행동강령」제18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및 제32조(투명한 회계처리), 「예산집행지침」

특근매식비 집행 내역이 거래처별 월사용 금액만 있고 사용일과 사용인원 등의 명확한 증빙자료가 없으며, 이를 확인하지 않고 부서별 현원 기준으로 예산한도액을 전액 결제함으로써 특근매식비 예산사용목적의 취지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음.

9

직접인건비 산정 업무처리 부적정

< 요 약 >

「○○○○○부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24조(연구개발비 계상)

○○원의 인건비는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급여총액 × 참여율’에 따라 산정해야 하나 급여총액을 달리 산정하여 2014년 10월부터 인건비가 월 337,268원 만큼 과소 산정되었으며, 또한 퇴사로 인한 연구원 교체에 따른 인건비 변경내역을 즉시에 반영하지 않아 2014년 12월부터 매월 434,524원 만큼 인건비를 과다 산정함.

10

연구과제별 참여연구원 수 및 참여비율(기여율)에 관한 사항

< 요약 >

「연구개발규정」제14조(연구개발진 구성) 제1항 ~ 제3항

연구과제의 주책임자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주어진 연구기간 내에 연구의 완성을 높여 연구과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연구진을 구성하여야 하나, 2015년도 연구과제별 참여연구원 수 및 참여비율을 연구과제당 1명에서 10명까지 참여하고 있고 참여비율도 최소 10%~172%까지 참여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연구과제 수행이 어렵고, 연구의 완성을 기대하기가 어려움.

11

연구성과의 현업적용에 관한 사항

< 요약 >

「연구개발규정」제32조(연구성과의 활용촉진 등) 제1항 및 「연구개발규칙」 제45조(연구결과의 반영 및 활용) 제2항

연구성과발표회 등을 통해 연구성과를 전달하려는 노력은 있으나, 연구성과에 대하여 공사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업부서와 협의하여 현업적용 및 실용화를 위한 노력은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연구결과에 대한 실용화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연구성과가 공사의 신규사업 발굴, 정책결정과 기술활용에 활용되고 그 결과가 ○○원으로 피드백 되는 연구사이클의 정착이 필요함.

12

연구성과 계량화 및 평가 개선에 관한 사항

< 요약 >

「연구개발규정」제28조(연구성과의 평가) 및 「연구개발규칙」 제37조(연심회 평가원칙), 「연구개발규칙」 제39조(연심회별 평가비중)

과제마다 연구 참여 인원의 수, 예산의 투입정도, 중요 과업의 외부 위탁 유무, 연구기간과 방법이 다르므로 이를 고려한 평가가 이뤄져야 하지만 현행 평가체계는 동일한 비중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있어, 좋은 평가를 받기위해 불필요한 예산 투입과 중요사항 외부위탁 등의 방법에 치중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연구의 중요도, 인원수, 예산, 수익성, 연구기간과 방법 등을 고려한 과제의 계량화를 통하여 연구과제의 선정과 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 요 약 >

「연구개발규칙」제31조(연심회 대상과제), 제63조(회의) 및 「연구개발규칙」제45조(연구결과의 반영 및 활용) 제1항

위 규칙에서 정한 연심회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별도지침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2014년도에 ○○원에서 수행한 수탁과제를 제외한 연구과제 25개 중 연심회에서 심의·평가한 과제는 10개과제로 비공개, 수시과제, 전부 위탁 등의 이유로 착수·중간·최종 연구수행에 대한 연심회 개최를 생략하였다. 따라서 연심회를 생략할 수 있는 명확한 사유, 과제의 특성상 비공개로 추진하는 연구과제 등에 대하여 연심회 개최 여부 등에 대한 내부기준 마련이 필요함.

..... < 요 약 >

「임직원행동강령」제18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32조(투명한 회계관리) 및 「예산집행지침」

특근매식비 예산은 초과 근무한 날에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사용일과 사용인원 등의 세부 사용내역 등의 근거자료를 갖추어 집행하는 등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초과 근무한 날에 한하여 집행하여야 하는 특근매식비 예산 사용목적외 고려해 볼 때 사용일, 사용인원, 금액 등의 세부 사용내역 등의 근거자료에 대한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IV.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1. 행정상·재정상·신분상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단위: 건, 명, 원)

처분지시 일련번호	감사대상기관 (관계기관/부서)	건 명	처분요구			조치기한	감사자
			행정상 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13-1	0000실	2014년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 소홀	통보			1개월	000
13-2	0000실 0000000실	외부강의·회의 등에 관한 사항		회수:218,600	문책 (주의 2)	20일	〃
13-3	0000000원	2015년도 연구과제별 연구진 구성 부적정	통보			1개월	〃
13-4	0000실	빅데이터를 활용한 LX비즈니스 모델연구 수행계획 업무처리 소홀			문책 (주의 1)	20일	000
13-5	0000000실	연구과제로 개발된 시스템 관리 소홀	시정	등록:134,160,000		1개월	000
13-6	0000실	소그룹 연구 활동 관리 소홀	통보			1개월	000
13-7	0000실 0000000실	일상감사 의뢰 소홀	통보			1개월	000
13-8	0000실	특근매식비 예산집행 부적정	통보			1개월	000
13-9	0000000실	직접인건비 산정 부적정	통보			1개월	000
13-10	0000실	연구과제별 참여 연구원 수 및 참여비율(가여율)에 관한 사항	권고			2개월	000
13-11	"	연구성과의 현업적용에 관한 사항	권고			2개월	000
13-12	"	연구성과 계량화 및 평가 개선에 관한 사항	권고			2개월	000
13-13	"	연구심의회 운영 등 내부기준 미비	권고			2개월	000
2015-11	0000실	특근매식비 예산집행 근거자료 기준 미비	권고			2개월	"

※ 처분요구: 14건<행정상조치: 통보 6, 권고 5 / 재정상조치: 문책 회수 1(218,600원), 시정 1(등록:134,160,000원) / 신분상조치: 문책 1>

1-1. 신분상 조치인원 명세

제 목	처 분 내 역				
	조치양정	소 속	직 급	성 명	관련 지적사항
외부강의·회의 등에 관한 사항	주의	0000000원 0000000실	책임연구원	000	외부강의·회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 소홀
	주의	0000000원 0000000실	"	000	"
빅데이터를 활용한 LX비즈니스 모델연구 수행계획 업무처리 소홀	주의	0000000원 0000000실	선임연구원	000	외부공동연구원 선정 소홀

2. 현지조치사항 일람표

일련번호	감사대상기관 (관계기관/부서)	제 목	조치사항	금액	감사자
1	0000000원	연구성과 현업부서 활용 노력 및 리뷰에 관한 사항	현지(통보)		000
2	〃	연구노트 작성 소홀	〃		000
3	"	사무분장 업무처리 소홀	〃		000
4	〃	직장교육훈련 처리 소홀	〃		"

3. 모범사례

일련번호	2015-12
제 목	○○○○○처 신규 수탁과제 선정 보고

□ 과제개요

- (과제명)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연안도시지역별 복합원인(해수면 상승 +태풍 등)의 홍수 취약성 평가기술 개발 및 대응 방안 연구
- (연구기간) 4년 (2015. 5. 1. ~ 2019. 4. 30. 예정)
- (과제구성)
 - 1세부 :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연안도시 홍수취약성 평가기술 개발
 - 2세부 : 기후변화에 따른 연안도시 홍수피해 대처계획 수립기술 개발
 - 3세부 : 기후변화에 따른 연안도시 재해예측 및 관리시스템 개발
- (전체 연구비)

(단위: 백만원)

	총액	1차년도 (2015)	2차년도 (2016)	3차년도 (2017)	4차년도 (2018)
전체	8850	1100	2050	3100	2600
○○원	249	31	54.2	89.4	74.4

□ 요약

- ○○○○○처의 신규 수탁과제에 타 기관과 함께 공모하여 선정됨에 따라 향후 4년간 약 2억 5천만 원의 연구비를 확보함.
- 해당 연구를 통해 LX ○○○○○○○원에 최신 재난관리 연구역량(침수흔적 관리시스템 활용)을 함양하고 나아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일정

- ○○○○○처 신규과제 모니터링 - 2014년 연중
- 공모과제 컨소시엄 구성회의(3회) 참석 - 2014년 말 ~ 2015년 1월
- 연구기관별 세부과제 조정 회의(3회) - 2015년 1월 ~ 2015년 2월 초
- 제안서 작성을 위한 합사 참석: 2월 28일 ~ 3월 2일
- 제안서 제출: 3월 6일
- 제안발표: 3월
- 과제선정 발표: 4월 7일
- 협약체결: 5월 1일

□ 향후 연구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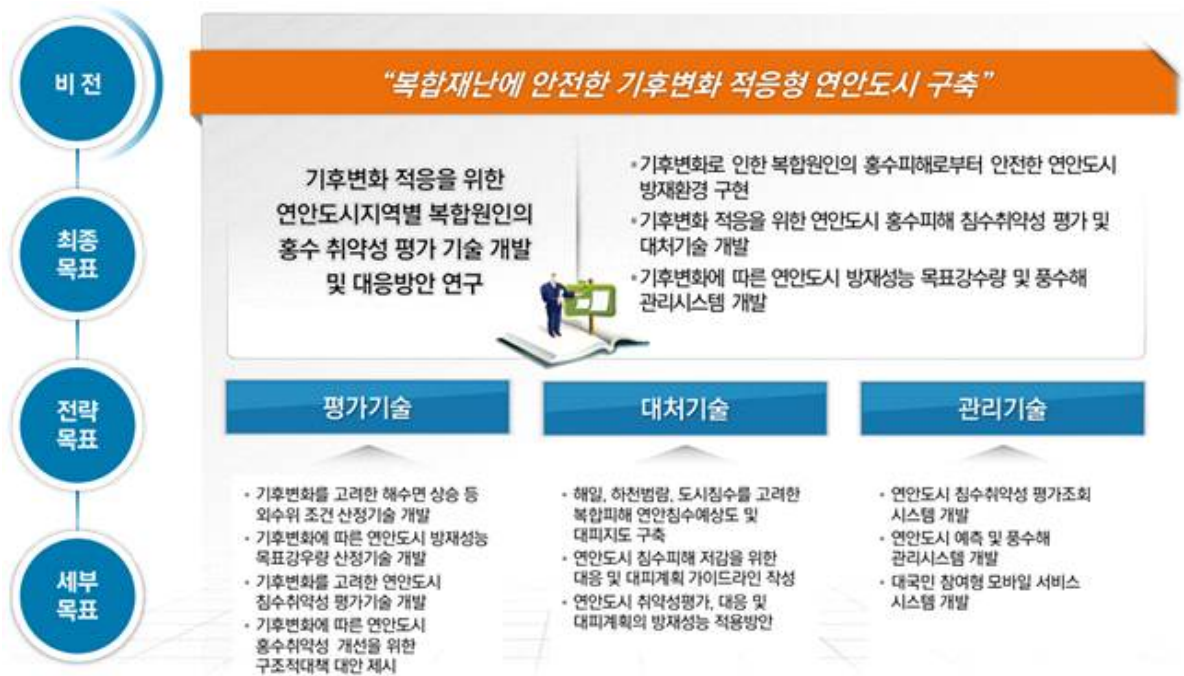
- 3세부 연구진으로 참여
 - LX ○○○○○○○원, ○○○○○(주), (주)○○○○, ○○○○○○○, ○○대 학교와 공동연구 수행
- 담당 연구내용
 - 연안도시 재해관리시스템과 침수혼적관리시스템의 연계 방안 마련
 - 동해, 서해, 남해권역 연안도시 재해정보지도 구축

□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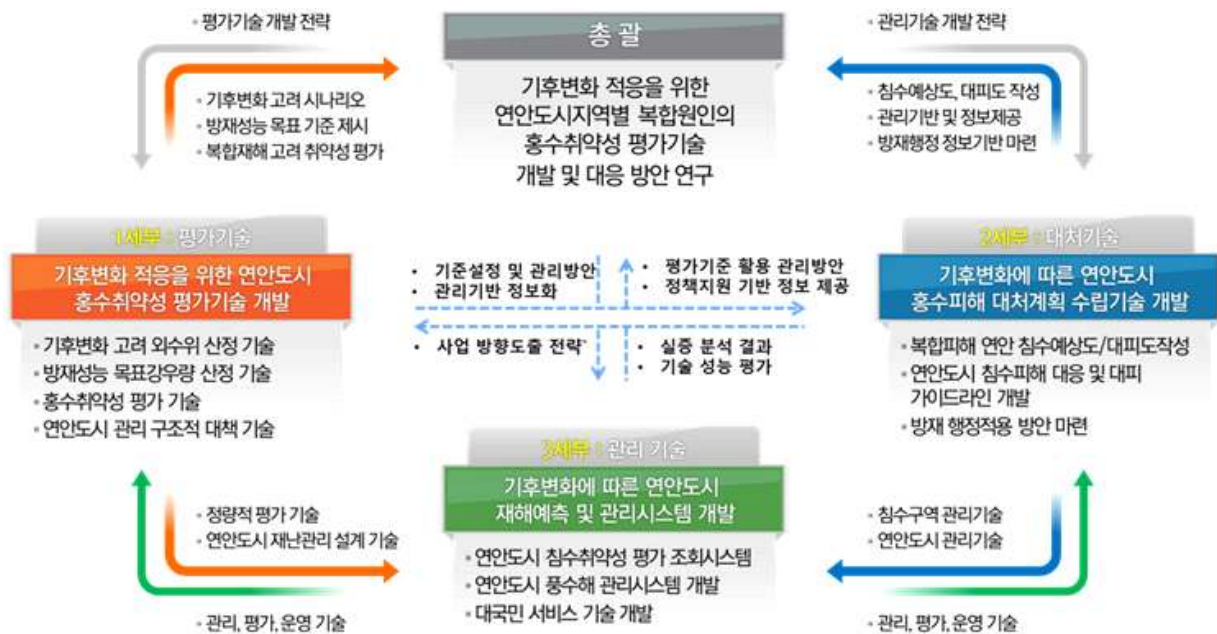
- (역량확대) 본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침수혼적관리시스템을 통합적인 재해지도 관리 시스템으로의 발전 방안 마련
- (신사업확보) 연구를 통해 제작될 연안도시관련 재해지도에 대한 지속적인 구축 및 관리 방안 마련

□ 참고

○ 전체연구 개요



○ 연구추진 체계



일련번호	2015-13
제 목	○○○○○○○부 중장기 국가 R&D 연구과제 수주

□ 과제명: 지능형자동차 인식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공개용 표준 DB 구축
및 평가시스템 개발

- ○○○○○○○원이 지속적으로 심혈을 기울여 연구제안한「자율주행관련 스마트카」기술분야 연구과제 주관기관으로 선정
- ○○○○○○○부에서 공모한 R&D 연구과제

□ 기본정보

- 지원분야: 2015년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시스템산업-스마트카
- 과제유형: 일반형-원천기술-지정공모
- 기술분야: 차량지능화기술
- 과제기간: ‘15. 6. 1 ~ ’ 20. 5 .31(5년)
- 정부출연금: 50억

□ 주요내용

- 주요내용
 - 다양한 실외환경에서 지능형자동차가 거동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도로 정보
환경과 이동대상체에 대한 디지털지도 구축 및 DB 공개서비스
- 주관기관: 한국국토정보공사 ○○○○○○○원
- 참여기관: ○○○○○○○○○원, ○○○○○○○○○원, ○○○○○○○○○원, (재)○○○ ○○○○○○○원
- 총괄예산: 63억원(정부출연금 + 현물)



□ 추진경위

- 대상과제 공고: ‘15. 1. 6(○○○○○부 장관)
- 사업계획서 작성 착수: ‘15. 1. 13
- 전산등록: ‘15. 2. 23
- 사업계획서 제출: ‘15. 2. 24(○○○○○○○○○○○○○○원 ○○○원)
- 사전서면검토: ‘15. 4. 10(○○○○○○○○○○○○○○원 ○○사무소)
- 발표평가: ‘15. 4. 23
- 평가위원회 결과통지: ‘15. 4. 28

□ 추진 장벽 및 극복

○ 추진장벽

- 공고된 기술분야는 자동차관련 산·학·연에서 독점하고 있는 상황
- 제안요청서(RFP) 작성기관과 참여 LX 컨소시엄이 상이한 상황

※ 국가 R&D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발주기관은 기술수요조사를 수행하고,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력을 통해서 RFP를 작성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RFP 작성기관이 과제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아 공고된 과제를 수주하는 경우가 대다수임

- ○○○○○○○부 발주과제에 ○○○○○부 산하기관 참여에 거부감

○ 극복방안

- 제안요청서(RFP)에서 요구하는 성격과 가장 부합되고 차별화된 사업 계획서 작성 제출
 - 새로운 진입분야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충분한 자료조사 및 컨소시엄 기관과 의사소통을 통한 정보공유
- ※ 본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컨소시엄 기관중에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기관과 상용차를 이용하여 무인차량 및 차량형 로봇 플랫폼 등을 개발하고 관련시스템을 연구 개발하는 산업체등의 자문회의등을 통하여 사업계획서 작성과 과제내용 피드백을 수행
- 본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부 산하 자동차분야와 ○○○○○부 산하 디지털지도 작성분야가 협업의 기회로 설명
 - 지속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인프라인 디지털지도 구축과 서비스 및 관리를 공공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수행할 의지를 표명

□ 기대효과

- 자율주행분야 빅데이터 확보 및 도로관리시스템구축 관련업무 개발에 기여
- 전국도로망 확대구축을 통해 공사 먹거리 창출
- 한국국토정보공사 차세대 비즈니스모델 확보 기반 마련

□ 향후계획

- 자율주행 자동차 2020년 상용화에 대비해 차선정보가 포함된 고정밀 디지털 지도를 작성
-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 기술개발 및 도로분야 빅데이터 확보를 추진할 예정
- 본 과제를 통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주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지도가 필수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하고, 전국에 배치된 인적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는 공공기관에서 디지털지도 작성을 전담하는 것이 타당함을 제안

V. 기타사항

1. 향후 처리계획 및 특기사항

-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에 처분 요구
- 사후 관리이행 점검

2. 종합감사 총평 및 마감회의

-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 및 반부패·청렴교육



(종합감사 총평)



(반부패 청렴 교육)

붙임: 1. 지적사항 총괄 현황 1부.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14부. 끝.

감 사 통 보

제 목 2014년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 소홀

관계기관 □□□□□□원 ○○○○실

내 용

「감사기준시행세칙」 제35조 (감사결과의 조치) 제1항부터 3항에 “감사는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피감부서에 처분할 때에는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내고, 이에 따른 처리기간은 1. 통보: 1개월, 3. 개선요구: 2개월, 6. 회수요구: 1개월이며, 처리기한은 조치요구서가 발송된 날부터 기산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원장은 2014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결과를 통지 받은 날[□□□□□□원 종합감사 결과 통지(감사실-2441:2014. 7. 3)]로부터 1개월 또는 2개월 이내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하였다.

[2014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

제 목	완료 여부	보고 여부	처분일자	조치일자	초과일수	처분결과	조치결과
위촉○○원 채용 및 관리업무 개선	완료	보고	2014-07-03	2014-10-15	42일	개선	개선
업무상 국외 출장 사전후 관리 소홀	완료	보고	2014-07-03	2014-08-01	기한내	통보	통보
자본적 지출 및 사업계획 잔여예산 미반납	완료	보고	2014-07-03	2014-08-01	기한내	회수 (34,979,900)	회수 (34,979,900)
해외사업 미수금 관리 철저	완료	보고	2014-07-03	2014-12-10	129일	회수 (42,917,358)	회수 (42,713,999)
연구노트 작성 지침 마련	완료	보고	2014-07-03	2014-09-03	-	개선	개선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체계 구축 마련	미완료	미보고	2014-07-03	진행중	11개월	개선	진행중

그런데도 위 현황과 같이 2014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2건은 처리기한을 각각 42일, 129일을 초과하여 보고하였고, 1건은 감사일 현재까지 미집행 사유나 집행경위 등에 대하여 감사에게 보고하지 않는 등 2014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원장은 보고하지 않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라며, 「감사기준시행세칙」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 지적사항 처리를 철저히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문책 · 시정(회수)요구

제 목 외부강의·회의 등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원 ○○○○실, ○○○○○○○실

문 책 대 상 자 책임○○원 임○○

책임○○원 이○○

문책 종류 주의

내 용

1. 외부강의 · 회의 등의 신고 소홀

「임직원행동강령」제36조(외부강의 · 회의 등의 신고) 제1항에 “임직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 공청회 · 토론회 · 발표회 · 심포지엄 · 교육과정 · 회의 등에서 강의 · 강연 · 발표 · 토론 · 심사 · 평가 · 자문 · 의결 등(이하 “외부 강의 · 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 · 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별지 제4호 서식(외부강의 · 회의 등의 신고서)에 따라 외부강의 등 개시 전까지 행동강령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대상은 별표 제2호(외부강의 · 회의 등의 신고대상¹⁾) 및 결재방법)와 같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연구위원 김 ○ 외 14명은 “□□시 동안구 경계결정위원회” 등 외부강의 · 회의 등에 참석하면서 “e-감사시스템_청렴_외부강의등록”에 외부강의 · 회의 등의 신고를 하여야 하였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외부강의·회의 등도 신고 대상에 포함

[외부강의·회의 등 미 신고 현황]

“붙임1 참조”

그런데도 위 현황과 같이 연구위원 김 ○ 외 14명은 총32회에 걸쳐 외부강의·회의 등에 참석하면서 복무규정에 따른 근태처리는 하였으나, 「임직원행동강령」제16차 개정(2013.10.18.)전 제36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제1항 단서조항(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를 소홀히 하였다.

2. 외부강의·회의 등 참석 직원 근태처리 부적정

「임직원행동강령」제36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제6항에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회의 등에 참석한 경우에는 반드시 복무규정에 따라 처리를 하여야 한다.” 고 되어있다.

따라서 책임○○원 이○○ 외 5명은 “국가해양영토 광역감시망 구축 기획 연구 전문가 자문회의” 등 외부강의·회의 등에 참석한 경우에는 복무규정에 따라 여비 없는 일반출장 처리를 하여야 하였다.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 건 근태처리 현황]

“붙임2 참조”

그런데도 위 현황과 같이 책임○○원 이○○ 외 5명은 총13회에 걸쳐 외부강의·회의 등에 참석하면서 “외출(2명/6회), 근태 미처리(2명/2회), 여비 있는 일반출장(3명/5회) 처리를 하는 등 근태처리를 소홀히 하였다.

3. 외부강의·회의 등 사장 승인 사항 승인 누락

「임직원행동강령」제36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제4항에 “외부강의·회의 등이 근무 시간 외라 할지라도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 해당하며, 외부강의·회의 등이 1. 연간 12회를 초과하는 경우 2. 연간 누적 대가금액이 3백만 원 초과하는 경우 3. 기타 대형 연구사업 기획 등을 위한 회의 및 위원회 피선 등에는 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고되어 있다.

따라서 책임○○원 임○○ 외 1명은 “국토공간의 이용현황 조사 및 정보구축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등 연간 12회를 초과하거나 누적 대가금액이 3백만 원을 초과하는 외부강의·회의 등에 참석한 경우에는 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였다.

[외부강의·회의 등 참여 현황]

신고자부서	신고자직급	신고자성명	요청기관	강의/연구/출제기간	대가	사장승인여부	비고
○○○○실	3급	임○○	○○대학교	2015-04-01 ~ 2015-06-30	184만원	미승인	주1회(화) 19:00~20:30(90분) 11.5만원, 16회
			○○○○○○원	2014. 3. 1 ~ 2014.10.31	350만원	미승인	국토공간의 이용현황 조사 및 정보구축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실	2급	김 ○	○○○○○○○○공단	2014-10-15 ~ 2014.10.26	350만원	미승인 ²⁾	11박12일 일반출장처리(휴일포함)

2) 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숙출제 의뢰 승인요청(○○○○실-1963:2014.10.15.) 하였으나, 본사 ○○○○실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숙출제는 승인사항이 아니며 대가를 받은 후 위랜드 e-감사시스템 외부강의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라는 사유로 반송함.

그런데도 위 현황과 같이 책임○○원 임○○ 외 1명은 “○○대학교 출강” 등 연간 12회를 초과하거나 누적 대가금액이 3백만 원을 초과하는 외부강의·회의 등에 참석하면서 사장의 승인을 받지 않는 등 외부강의·회의 등의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원장은 「직원경고 등 처분에 관한 지침」 제5조(처분사유)에 따라 외부강의·회의 등의 업무 처리를 소홀히 한 책임○○원 임○○ 외 1인에 대하여 **문책(주의)** 처분하고, 외부강의·회의 등에 참석하면서 부적정하게 지급된 출장여비 218,600원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임직원행동강령」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강의·회의 등에 관한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외부강의·회의 등 미신고 현황]

출장지	출장목적	발의부서	출장명령일	출장기간	출장자	작성자	외부강의 신고여부	대가 (만원)	비고
○○○○도 ○○○○원	○○○○도 지적직공무원 교육	○○원/○○○○○실	2014-07-01	2014-07-02 ~ 2014-07-03	강○○	이○○	×	20	지자체
○○시 ○○○○과	수치지형도갱신 및 연속DB구축사업 관련 자문회의 참석	○○원/○○○○○실	2014-08-28	2014-08-28 ~ 2014-08-28	강○○	김○○	×	10	지자체
○○○○○○개발원(○○)	지적재조사과정 출강	○○원/○○○○○실	2014-09-16	2014-09-21 ~ 2014-09-22	김○	최○○	×	30	지자체
○○(○○동 ○○회의실)	○○○○○○원 공간정보법제 워크숍 발표	○○원/○○○○○실	2014-06-25	2014-06-27 ~ 2014-06-27	김○,임○○	임○○	×	20	국가기관
○○역	○○○○○○원 연구회의 토론	○○원/○○○○○실	2014-08-19	2014-08-21 ~ 2014-08-21	김○,임○○	임○○	×	20	국가기관
○○(건설공제조합)	2014년도 KLIS 기능개선 사업 운영성과 검증 참석	○○원/○○○○○실	2014-12-04	2014-12-08 ~ 2014-12-09	김○○	김○○	×	71	국가기관
○○발전○○원(○○)	안전한 도시 만들기 국제 심포지엄 참석	○○원/○○○○○실	2014-12-09	2014-12-10 ~ 2014-12-10	배○○	배○○	×	25	지자체
○○○○○○개발원(○○)	지적재조사 과정 강의	○○원/○○○○○실	2014-04-16	2014-04-21 ~ 2014-04-21	양○○	양○○	×	30	국가기관
○○○○시청	공간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	○○원/○○○○○실	2014-02-06	2014-02-06 ~ 2014-02-06	이○○	이○○	×	10	지자체
○○부	지적재조사 표준용역사업 평가위원 참석	○○원/○○○○○실	2014-08-28	2014-09-01 ~ 2014-09-01	이○○	이○○	×	10	국가기관
○○ 예산	도로명주소 발전방안 워크숍 참석	○○원/○○○○○실	2014-11-18	2014-11-19 ~ 2014-11-19	이○○	이○○	×	10	국가기관(○○부)
○○대학(○○ ○○)	연구성과 홍보	○○원/○○○○○실	2014-05-27	2014-05-30 ~ 2014-05-30	이○○	이○○	×	22	국공립
○○대(○○)	외부강의	○○원/○○○○○○○실	2015-02-09	2015-02-10 ~ 2015-02-10	이○○	연○○	×	25	국공립
○○○○○○○○원	자문회의 참석	○○원/○○○○○실	2014-05-27	2014-05-27 ~ 2014-05-27	이○○	이○○	×	15	국가기관
○○구 HRD 회의실	집합건물법 개정위원회 위원 참가	○○원/○○○○○실	2014-12-02	2014-12-03 ~ 2014-12-03	임○○	임○○	×	10	국가기관(○○부)
○○ ○○동	집합건물법 개정위원회 위원 참석	○○원/○○○○○실	2014-12-09	2014-12-09 ~ 2014-12-09	임○○	임○○	×	10	국가기관(○○부)
○○(○○○○ 호텔)	집합건물법 개정위원회 개정위원 참석	○○원/○○○○○실	2014-12-19	2014-12-19 ~ 2014-12-19	임○○	임○○	×	10	국가기관(○○부)
○○○○○○○원	2015년 국가교통조사 및 DB구축사업 위탁사업자 선정평가 참석	○○원/○○○○○실	2015-04-07	2015-04-07 ~ 2015-04-07	정○○	정○○	×	23	국가기관
○○○○○○○종합센터	세계측지계 변환 직접수행을 위한 담당자 교육 강의	○○원/○○○○○실	2014-07-08	2014-07-09 ~ 2014-07-09	정○○	정○○	×	33	지자체
○○도청	세계측지계 변환 직접수행을 위한 담당자 교육	○○원/○○○○○실	2014-07-23	2014-07-28 ~ 2014-07-28	정○○	정○○	×	60	지자체
○○시청	○○시 지적 토지관리분야 직장교육 참석	○○원/○○○○○실	2014-08-22	2014-08-22 ~ 2014-08-22	정○○	정○○	×	38	지자체
○○지텔 ○○○○○(○○구로)	지적재조사 행정시스템 착수보고 및 자문회의 참석차	○○원/○○○○○실	2014-09-15	2014-09-16 ~ 2014-09-16	정○○	정○○	×	11	국가기관
○○광역시	○○광역시 지적재조사사업 담당자 워크숍 참석	○○원/○○○○○○○실	2015-04-27	2015-04-28 ~ 2015-04-28	정○○	정○○	×	20	지자체
○○○○ 도청	○○○○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회의 참석	○○원/○○○○○○○실	2015-05-12	2015-05-13 ~ 2015-05-13	정○○	정○○	×	20	지자체
○○○○○○개발원(○○)	○○○○○○○○개발원 감사위촉	○○원/○○○○○실	2014-04-21	2014-04-22 ~ 2014-04-22	차○○	이○○	×	30	국가기관
○○○○대학교	V-World 특강	○○원/○○○○○○○실	2015-01-08	2015-01-08 ~ 2015-01-08	차○○	이○○	×	30	국공립
○○(○○청)	2014 지구물리 발전 포럼 참석 및 주제발표	○○원/○○○○○실	2014-05-27	2014-06-03 ~ 2014-06-03	하○○	하○○	×	15	국가기관
○○	○○○○○○○원 GNSS 통합센터 구축 연구사업 보고회 참석	○○원/○○○○○실	2014-06-17	2014-06-18 ~ 2014-06-18	하○○	하○○	×	15	국가기관
○○(○○○○○○○원)	○○○○○○○원 GNSS기반 구조물 모니터링 연구사업 보고회 참석	○○원/○○○○○실	2014-07-01	2014-07-02 ~ 2014-07-02	하○○	하○○	×	15	국가기관
○○(○○○○○○○원)	위성측량 서비스 고도화 연구사업(2차) 중간보고회 참석	○○원/○○○○○실	2014-07-23	2014-07-28 ~ 2014-07-28	하○○	하○○	×	15	국가기관
○○○○○○○원	위성기준점 데이터 통합체계 구축(1차년도) 중간보고회 참석	○○원/○○○○○실	2014-10-21	2014-10-24 ~ 2014-10-24	하○○	하○○	×	14	국가기관
○○○○○○○원(○○)	GNSS 측량서비스 고도화 연구(2차년도) 최종보고회 참석	○○원/○○○○○실	2014-10-28	2014-10-29 ~ 2014-10-29	하○○	하○○	×	15	국가기관

【붙임 2】

외부강의 회의 등 신고 건 근태처리 현황

접수일	신고자 부서	신고자 직급	신고자 성명	요청기관	강의날짜	대가	근태처리		비고
							근무상황카드	여비교통비	
2014-11-17	□□□□□원 ○○○○실	5급	강○○	○○○○○○○○원	2014-11-18 ~ 2014-11-18	15만 원	출근	외출 (인사동)	
2014-03-28	□□□□□원 ○○○○실	5급	류○○	○○○○○○공사	2014-03-27 ~ 2014-03-27	24만 원	일반출장	20,000 원	회수
2014-03-06	□□□□□원 ○○○○부	5급	윤○○	○○IT○○○○협회	2014-03-07 ~ 2014-03-07	20만 원	일반출장	20,000 원	회수
2014-06-13	□□□□□원 ○○○○부	5급	윤○○	○○○도청	2014-06-18 ~ 2014-06-19	198,600원	일반출장	138,600 원	회수
2014-08-14	□□□□□원 ○○○○부	5급	윤○○	○○○○협력단(***CA)	2014-08-27 ~ 2014-08-27	20만 원	일반출장	□□□출장병행 20,000 원	회수
2014-10-16	□□□□□원 ○○○○실	2급	이○○	○○○○학회	2014-10-08 ~ 2014-10-08	20만 원	출근	근태미처리	
2014-03-12	□□□□□원 ○○○○실	3급	이○○	(주)○○○○	2014-03-03 ~ 2014-03-03	286,800원	출근	외출 (□□□□회관)	
2014-04-23	□□□□□원 ○○○○실	3급	이○○	○○○○○○○○원	2014-04-24 ~ 2014-04-24	10만 원	출근	외출 (○○○○○○○○원)	
2014-06-13	□□□□□원 ○○○○실	3급	이○○	□□□□□원	2014-06-13 ~ 2014-06-13	150,000원	출근	외출 (□□□□□원)	
2014-07-29	□□□□□원 ○○○○실	3급	이○○	○○○○○○○○원	2014-07-30 ~ 2014-07-30	10만 원	출근	외출 (○○○○○○○○원)	
2014-10-30	□□□□□원 ○○○○실	3급	이○○	○○○○○○○○원	2014-10-30 ~ 2014-10-30	15만 원	출근	근태미처리	
2014-11-10	□□□□□원 ○○○○실	3급	이○○	○○○○○○○○원	2014-11-10 ~ 2014-11-10	15만 원	출근	외출 (○○○○○○진흥원)	
2014-05-26	□□□□□원 ○○○○실	3급	정○○	○○○○원	2014-05-16 ~ 2014-05-16	20만 원	일반출장	20,000 원	회수
합 계			6명/13회					218,600 원	

감 사 통 보

제 목 2015년도 연구과제별 연구진 구성 부적정

관계기관 □□□□□□원 ○○○○실, ○○○○실, ○○○○○○실

내 용

「연구개발규칙」제18조(연구진 구성) 제1항에 “주책임자가 규정 제14조에 근거하여 연구진을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과의 협의를 거쳐 참여 연구진의 신규과제 업무분담 내역, 기존과제 수행현황 등을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연구기획부서장은 과제의 특성과 전체 연구인력 배분현황, 연구인력의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연구진을 구성(변경 또는 추가 포함)하고, ○○○장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고 되어 있다.

따라서 연구과제 주책임자 및 연구기획부서장은 연구진의 신규과제 업무분담 내역, 기존과제 수행현황과 전체 연구인력 배분현황, 연구인력의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연구진을 구성하여 연구원장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하여야 하였다.

[2015년도 연구원별 연구과제 참여비율³⁾/과제수행 건수⁴⁾ 현황]

“붙임 3 참조”

3) 참여비율이란 연구원의 근로시간(8시간/1일)중에서 1개 과제에 1일 투자하는 시간의 비율을 말함. 즉, 어떤 과제에 1일 2시간을 투자한다면 그 과제에 대한 참여비율은 25%임.

4) 과제 수행 건수 : 참여비율, 과제수행 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수행 건수 임.

그런데도 위 현황과 같이 2015년도 연구원별 연구과제 참여비율, 과제수행 건수 및 과제수행 공백기간을 분석해본 결과 참여비율은 최소 10% ~ 최대 172%(평균 77.9%), 과제수행 건수는 최소 1건 ~ 최대 5건(평균 3.1건) 까지 편차(공백)가 있는 등 2015년도 연구과제별 연구진을 부적정하게 구성하였다.

조치할 사항

□□□□□□원장은 「연구개발규칙」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과제별 연구진 구성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3]

□ 2015년도 연구원별 연구과제 참여비율

□□□□□원 (○○○○실, ○○○○○○○실)	성명	김○	정○○	임○○	이○○	최○○	배○○	이○○	이○○	정○○	이○○	곽○○	박○○	신○○	이○○	이○○	차○○	강○○	이○○
	비율(%)	39	172	62	80	60	127	75	50	82	40	90	119	109	60	89	65	40	104
	성명	송○○	남○○	하○○	이○○	허 ○	서○○	정○○	이○○	이○○	이○○	강○○	김○○	이○○	연○○	김○○	이○○	합계	평균
	비율(%)	70	60	85	27	163	40	60	10	55	30	115	120	115	130	95	10	2,648	77.9

□ 2015년도 연구원별 과제수행건수

□□□□□원 (○○○○실, ○○○○○○○실)	성명	김○	정○○	임○○	이○○	최○○	배○○	이○○	이○○	정○○	이○○	곽○○	박○○	신○○	이○○	이○○	차○○	강○○	이○○
	건수	4	5	3	3	2	5	4	3	4	2	4	5	5	3	5	2	4	4
	성명	송○○	남○○	하○○	이○○	허 ○	서○○	정○○	이○○	이○○	이○○	강○○	김○○	이○○	연○○	김○○	이○○	합계	평균
	건수	1	2	3	2	4	3	3	1	2	2	3	5	3	3	1	1	106	3.1

※ 건수: 참여비율, 과제수행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수행 건수 임.

감 사

문 책 요 구

제 목 빅데이터를 활용한 LX 비즈니스 모델연구 수행계획 업무처리 소홀
관 계 기 관 □□□□□□원 ○○○○실
문 책 대 상 자 ○○○○실 선임연구원 최○○
문 책 종 류 주의
내 용

「연구개발규칙」제76조 (전문가 명부 구축) 제1항에 “○○○장은 연구 개발사업의 기획·평가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전문가를 효율적으로 활용 하기 위하여 전문가 명부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공사의 인재풀에 등재 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고 되어있고,

「계약사무처리규칙」제29조 (견적서에 의한 가격결정) 제4항에 “추정 가격이 1천만 원 이상인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제34조에 정한 입찰공고의 내용에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전까지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절차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은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용(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준용한다.” 고 되어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LX 비즈니스 모델연구 공동○○원 위촉 현황]

구 분	소 속	성 명	연구내용	참여율(%)	비 고
공동연구원	○○○○○○○○(주)	심○○	프로젝트 추진(BM개발)방법론 개발 및 인프라 정의 및 전략	15	임의 선정
공동연구원	○○○○○	김○○	잠재Business model ideation수집, 분석, 평가 및 시장 고객의 정의	13	“
공동연구원	○○○○○○○○(주)	홍○○	ideation 데이터 획득, 분석 및 평가, 서비스 플랫폼 전략	10	“
공동연구원	○○○○○○○○○○	고○○	데이터 획득 및 분석, 고객가치 제안	10	“
계		4명			

* 4명 모두 인재풀 미등록자 임.

[빅데이터를 활용한 LX 비즈니스 모델연구 공동연구원 계약 현황]

(금액단위 : 만원)

계약자 상대자		계약내용				비 고
성 명	학 위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방법	
심○○	박사	2015. 3. 20	2015.3.20. ~ 2015.6.19	990	수 의 계약	개별계약
김○○	박사	2015. 3. 20	2015.3.20. ~ 2015.6.19	990	수 의 계약	“
홍○○	박사	2015. 3. 20	2015.3.20. ~ 2015.6.19	990	수 의 계약	“
고○○	박사	2015. 3. 20	2015.3.20. ~ 2015.6.19	990	수 의 계약	“
계				3960		

* 인건비 기준단가는 「예정가격 작성기준(회계예규) 제26조 제1항의 [별표5] 적용 참여율 50% 일 때 3,058,029원임

그러나 위 표 “빅데이터를 활용한 LX 비즈니스 모델연구 공동연구원 위촉현황” 과 같이 외부연구원 선정 시 공사 인재풀에 등록되지 않는 사람을 선정자의 주관에 의하여 임의로 공동연구원으로 선정하였으며, 계약 금액이 3960만 원으로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용역을 진행하여야 하는데도 개별적으로 수의계약 하는 등 계약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원장은 「직원경고 등 처분에 관한 지침」 제5조(처분사유)에 따라 공동연구원 선정업무를 소홀히 한 선임연구원 최○○에 대하여 **문책(주의)** 처분하고, 「연구개발규칙」 및 「계약사무처리규칙」등 관련규정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연구원 선정 및 연구용역에 따른 계약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시정요구(자산등록)

제 목 연구과제로 개발된 시스템 관리 소홀

관계기관 □□□□□□원 ○○○○○○실

내 용

「자산관리규칙」제8조(취득) 제1항에 “고정자산 및 이에 준하는 권리는 취득과 동시에 공사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고, 「같은 규칙」제10조(무형고정자산의 평가) 제1항에 “무형고정자산은 그 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고 되어 있다.

그리고 「연구개발규칙」제99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제5항에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1백만 원 이상이거나 1백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자산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시설·장비가 활용되지 않거나 저활용 되는 사실과 불용, 폐기 및 소유권이전 등 연구시설·장비의 변동사항을 자산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칙」같은 조 제6항에 “○○○장은 제5항에 따른 연구시설·장비 등록·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다.

[자산 미등록 장비(시스템) 현황]

(금액단위: 원)

연구과제	개발 일자	금액 (부가세포함)	담당자 (PM)
스마트 재해관리 시스템	2013. 10. 26.	57,000,000	연○○
초경량 무인항공기 운영관리 시스템	2013. 08. 31.	27,000,000	이○○
해외사업 관리 시스템	2013. 10. 19.	17,610,000	이○○
웹기반 세계측지계지원 플랫폼	2014. 12. 31	32,550,000	남○○
합계		134,160,000	

연구과제 수행에 따라 구축된 시스템은 공사의 예산을 투입하여 개발된 공사의 자산으로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에 등록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 현황과 같이 2013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연구과제로 개발된 “스마트 재해관리 시스템” 외 3개 시스템(134,160,000원)에 대하여 공사의 자산으로 등록하지 않고 사용하는 등 연구과제로 구축된 시스템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원장은 자산에 등록하지 않은 “스마트 재해관리 시스템” 외 3개 시스템(134,160,000원)에 대하여 공사의 자산으로 등록하고, 「자산관리규칙」 및 「연구개발규칙」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과제로 개발된 자산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통 보

제 목 소그룹 연구 활동 관리 소홀
관 계 기 관 □□□□□□원 ○○○○실
내 용

소그룹 연구 활동은 □□□□□□원에서 연구성과 활용도 향상과 집단지성(集團知性)⁵⁾의 실용적 연구문화 정착을 위해 [본부·지사 직원의 소그룹 연구 활동 지원계획(○○○○○○○실-200:2011. 1. 27.)]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추진하여 왔다.

또한 추진계획으로 소그룹에 대하여 연구예산의 지원과 토론방·블로그·SNS 등을 활용한 지식유통을 정례화하고, 연구수행과정의 멘토링 역할을 통해 연구네트워킹을 구축하며, 연구자료·기자재·S/W 등의 지원과 연구결과 내용 및 인력관리, 소그룹 연구 활동 추진사항 심사평가, 우수 연구과제 인센티브 제공, 연구 인력풀 CDP 관리, 우수 과제 성과확산 및 필요시 심화연구 등으로 계획하였다.

[연구원 소그룹 연구 활동 지원 현황]

(2014. 6. 1.~2015. 5. 31.)

구 분	지 원 현 황	비 고
멘토의 멘토링	없음	
연구자료, 기자재, S/W지원 현황	없음	
지식공유활동(CoP활동)	없음	
연구 인력풀 CDP 관리	없음	

5)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 다수가 참여해 서로 협력 및 경쟁하는 과정을 통해 발견되는 새로운 지적능력

그러나, 위 현황과 같이 연구 소그룹에 대하여 멘토링 실적과 연구자료·기자재·S/W지원 등의 실적이 없으며, 연구 인력풀 관리 또한 현행화 되어 있지 않다. 특히 2011. 3. 5. 개설된 소그룹 연구활동(CoP)은 2013. 5. 3. 이후 현재까지 활동 기록이 없는 등 소그룹 연구 활동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원장은 「소그룹 연구 활동 지원계획」등 관련 방침(안)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그룹 연구 활동에 대한 관리 및 지원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통 보

제 목 일상감사 의뢰 소홀

관 계 기 관 □□□□□□원 ○○○○실, ○○○○○○○실

내 용

「감사기준시행세칙」 제49조(일상감사의 범위) 제1항에 “일상감사의 범위는 본사의 경우 [별표 5], □□□□□□원 · □□□□□□원 · 지역본부 및 지사의 경우는 [별표 6]에서 정한 사항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고 되어있고,

[별표 6]

[일상감사의 범위(교육원·연구원·지역본부 및 지사)]

1. 소송가액 1억원을 초과하는 소송과 중재
2. 계약의 방침결정, 체결 및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 가. 추정가격 3,0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
 - 나. 추정가격 5,000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및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
3. 국외 출장계획
4. 매 건당 50만원을 초과하는 업무추진비
5. 정부 경영지침과 관련한 방침사항
6. 각 기관장의 결재를 필요로 하는 주요 운영방침 (2014.12.31. 신설)
7. 기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한 「같은 세칙」 제48조(일상감사의 목적)에는 “일상감사는 공사의 업무 중 감사가 정한 일정범위의 업무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사전 예방적 감사를 말한다.” 고 되어있다.

따라서 위 [별표6]에 해당하는 업무를 추진할 때에는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감사실로 일상감사를 의뢰하여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일상감사 미 의뢰 업무 현황]

건명	부서명	담당자	해당 일상감사 범위
연도별 연구개발 계획 및 2015년 사업계획(안)	○○○○실	오○○	기관장의 주요 방침
마일리지 부여기준 제정 계획(안)	○○○○실	김○○	기관장의 주요 방침
2014 스마트 국토엑스포 공사부스 운영을 위한 콘텐츠 제작	○○○○실	김 ○	3천만 원 초과하는 계약 체결
공공정보 기반의 주제도 시범제작 용역	○○○○실	김 ○	3천만 원 초과하는 계약 체결
○○○○부 ○○○○○시스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기관설립 계획(안)	○○○○○○실	김○○	기관장의 주요 방침

그러나 위 현황과 같이 “연도별 연구개발 계획 및 2015년 사업계획(안)” 등 5건에 대하여 일상감사 대상업무 임에도 불구하고 일상감사 의뢰를 하지 않는 등 일상감사 의뢰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원장은 「감사기준시행세칙」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상감사 의뢰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통 보

제 목 특근매식비 예산집행 부적정
관 계 기 관 □□□□□□원 ○○○○실
내 용

「임직원행동강령」제18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임직원은 출장비·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고 되어있고,

「같은 강령」제32조(투명한 회계관리)에 “임직원은 회계기록 그 밖에 재무관리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고 되어있다.

그리고 「예산집행지침」에 “경상적 경비의 집행을 최대한 절감 및 억제하는 등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복리후생비의 특근매식비는 직원이 초과 근무한 날에 한하여 배정받은 월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고 되어있다.

따라서 공사 예산집행은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 하고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특근매식비 예산은 초과 근무한 날에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사용일과 사용인원 등의 세부 사용내역 등의 근거자료를 갖추어 집행하는 등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은 특근매식비 예산을 부서 구분 없이(○○○○부는 별도 처리) 예산배정 범위 내에서 2014년 6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전체 36,536천 원을 집행하면서, [붙임 4] 현황과 같이 특근매식비의 예산 집행을 거래처별 월 사용금액만 있고 사용일과 사용인원 등의 명확한 근거자료 없이 부서별 현원 기준으로 예산 한도액을 전액 결제하는 등 사용목적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특근매식비 예산집행을 부적정하게 하였다.

조치할 사항

□□□□□□원장은 「임직원행동강령」 및 「예산집행지침」 등 관련 규정과 지침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근매식비에 대해 세부 사용내역 등의 객관적 근거자료를 갖추는 등 특근매식비 예산집행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4]

[특근매식비 집행현황]

(금액단위: 천 원)

사용월	예 산		집 행			비고
	인원	금액	집행액	집행내역	집행방법	
2014. 6월	48	2,880	2,826	◇◇ 468, ◇◇ 1,038, ◇◇◇◇◇◇ 342, ◇◇◇ 978	사용내역 확인 없이 월 사용대금 법인 카드 일괄 결제	
2014. 7월	53	3,180	3,114	◇◇ 606, ◇◇ 918, ◇◇◇◇◇◇ 330, ◇◇◇ 1,080, ◇◇◇ 순대 84, ◇◇설렁탕 96	“	
2014. 8월	48	3,360	3,360	◇◇ 462, ◇◇ 966, ◇◇◇◇◇◇ 508, ◇◇◇ 1,008, ◇◇◇ 순대 40, ◇◇설렁탕 100, ◇◇ 276	“	
2014. 9월	50	3,500	3,500	◇◇ 482, ◇◇ 1,382, ◇◇◇◇◇◇ 532, ◇◇◇ 698, ◇◇설렁탕 100, ◇◇ 286	“	
2014. 10월	50	3,500	3,500	◇◇ 844, ◇◇ 444, ◇◇◇◇◇◇ 616, ◇◇◇ 884, ◇◇◇ 순대 52, ◇◇설렁탕 366, ◇◇ 294	“	
2014. 11월	53	3,710	3,710	◇◇ 480, ◇◇ 1,250, ◇◇◇◇◇◇ 486, ◇◇◇ 934, ◇◇◇ 순대 14, ◇◇설렁탕 278, ◇◇ 198, ◇◇천국 70	“	
2014. 12월	54	3,780	3,780	◇◇ 802, ◇◇ 728, ◇◇◇◇◇◇ 738, ◇◇◇ 752, ◇◇◇ 순대 18, ◇◇설렁탕 368, ◇◇ 304, ◇◇나무 70	“	
2015. 1월	49	3,430	3,424	◇◇ 768, ◇◇ 1,028, ◇◇◇◇◇◇ 446, ◇◇◇ 640, ◇◇◇ 순대 24, ◇◇설렁탕 222, ◇◇ 226, ◇◇나무 70	“	

(금액단위: 천 원)

사용월	예 산		집 행			비고
	인원	금액	집행액	집행내역	집행방법	
2015. 2월	43	3,010	3,080	◇◇ 616, ◇◇ 378, ◇◇◇◇◇◇ 430, ◇◇◇ 968, ◇◇◇ 순대 92, ◇◇설렁탕 306, ◇◇ 220, ◇◇천국 70	사용내역 확인 없이 월 사용액 법인카드 일괄 결제	
2015, 3월	44	3,092	3,092	◇◇ 540, ◇◇ 824, ◇◇◇◇◇◇ 550, ◇◇◇ 510, ◇◇◇ 순대 40, ◇◇설렁탕 268, ◇◇ 360,	“	
2015. 4월	45	3,150	3,150	◇◇ 212, ◇◇ 458, ◇◇◇◇◇◇ 374, ◇◇◇ 1,390, ◇◇◇ 순대 24, ◇◇설렁탕 230, ◇◇ 360, ◇◇식당 70	“	
합 계		36,592	36,536			

* ○○○○부 제외, 특근매식비 사용일, 사용인원 등 세부내역 기록 없음.

감 사 통 보

제 목 직접인건비 산정 업무처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원 ○○○○○○○실
내 용

○○○○부는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을 두고 있으며, 동 지침 [별표 2]에 아래와 같이 인건비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다.

[별표2]

[국토교통연구개발 사업 관리 지침의 인건비 산정기준]

구 분		세 부 산 정 내 용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 × 참여율 ※ 법정부담금도 소속기관 규정에 따름
	연봉제 미적용기관	- 정부인정 12개 항목 × 참여율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금) - 정액급(기본연구활동비, 능력제고수당기본급) -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법정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 타 기 관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급여총액 × 참여율

□□□□□□원은 2013년 10월부터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인프라 고도화 기술 개발(이하 “오픈플랫폼 연구”라 한다.) 연구」를 “□□□□□□□□□□원”으로 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위 표의 기타기관 인건비 산정기준에 따라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급여총액×참여율’로 산출하여야 하였다.

[참여연구원 인건비 산출 현황]

(단위: 원)

연구원	연구원 산정기준액 (A)	참여율 (B)	산정인건비 (C=A*B)
이○○	5,300,000	75%	3,975,000
김○○	4,900,000	95%	4,655,000
이○○	4,500,000	95%	4,275,000
강○○	4,500,000	95%	4,275,000
연○○	4,500,000	95%	4,275,000
강○○	4,500,000	65%	2,925,000
이○○	3,000,000	100%	3,000,000
합계	31,200,000		27,380,000

그러나 위 “참여연구원 인건비 산출현황” 과 같이 근로소득신고서의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산정하여 아래의 “인건비 산정금액 차이” 와 같이 매월 337,268원 만큼의 인건비를 과소 계상하였다.

[인건비 산정금액 차이 현황]

(단위: 원)

연구원	산정인건비 (A)	참여율 (B)	2013 총급여 (C)	2013 급여월액 (D=C/12)	청구가능 인건비(E=B*D)	차이 (F=E-A)
이○○	3,975,000	75%	87,062,190	7,255,183	5,441,387	1,466,387
김○○	4,655,000	95%	50,393,020	4,199,418	3,989,447	-665,553
이○○	4,275,000	95%	46,567,090	3,880,591	3,686,561	-588,439
강○○	4,275,000	95%	60,710,900	5,059,242	4,806,280	531,280
연○○	4,275,000	95%	64,463,810	5,371,984	5,103,385	828,385
강○○	2,925,000	65%	56,824,950	4,735,413	3,078,018	153,018
이○○	3,000,000	100%	19,346,280	1,612,190	1,612,190	-1,387,810
합계	27,380,000		79,326,240	6,610,520	27,717,268	337,268

또한, 퇴사 등으로 참여연구원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이를 인건비 내역에 반영하여 적정한 인건비를 산정해야 하나 인건비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아 아래의 “인건비 산정금액 차이 현황” 과 같이 매월 434,524원 만큼 인건비를 과다 계상하였다.

[인건비 산정금액 차이 현황]

(단위: 원)

연구원	직급	산정인건비	청구가능 인건비	연구단 참여 현황	비고
강○○	5급	2,925,000	3,078,018	2014.11.퇴사	○ 5급에서 6급으로 연구원 변경되었으나 인건비 감소 내역(434,524원) 미반영
김○○	6급	2,925,000	2,643,494	2014.12.참여	

조치할 사항

□□□□□□원장은 「○○○○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과 지침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접인건비 산정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권 고

제 목 연구과제별 참여 연구원 수 및 참여비율(기여율)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원 ○○○○실
내 용

「연구개발규정」제14조(연구개발진 구성) 제1항에 “주책임자는 연구개발 과제의 전문성을 고려하고,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구진을 구성하여야 한다.” 고 되어있고,

「같은 규정」같은 조 제2항에 “주책임자는 과제와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한 원내 전문가 또는 현업부서 직원을 참여시킬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위촉연구원, 외부 전문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고 되어있으며,

「같은 규정」같은 조 제3항에 “연구기획부서장은 연구개발인력의 전문성 및 연구개발수행 현황을 고려하여 연구개발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연구원장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고 되어있다.

또한 정부에서 발주하는 연구과제는 연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또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개인별 참여비율을 30% 이상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과제의 주책임자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주어진 연구기간 내에 연구의 완성도를 높여 연구과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연구진을 구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2015년도 연구과제별 참여 연구원 수 및 참여비율을 살펴보면⁶⁾ [붙임 5]와 같이 연구과제당 1명에서 10명까지 참여하고 있고, 참여비율도 최소 5%에서 70%까지 참여하는 등 참여연구원 수와 참여비율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없이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양질의 연구 완성도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원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연구과제 수행과 연구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연구과제별 참여연구원 수 및 참여비율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6) 연구기간, 연구용역비 및 위탁(일부, 전체)여부 등 고려하지 않음.

[붙임 5]

2015년 연구과제별 참여연구원 수 및 참여비율 현황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참여○○원									비고
		PM	참여자								
			참여비율(5)								
풍수해 보험요율을 고려한 보험지도 작성 (2차년도)	14. 5..1. ~ 15. 4.30.	이○○ 25	강○○ 5	이○○ 5	연○○ 5	김○○ 5					
공간정보 기반의 Social Platform 서비스 구축 (4차 년도)	14. 7. 1. ~ 15. 6.30.	정○○ 30	배○○ 22	박○○ 16	신○○ 16	이○○ 16					
다중네트워크 수신국 운영 및 기구축 기준국 활용 가능성 검토	14. 8. 1. ~ 15. 7.31.	하○○ 30	강○○ 10	이○○ 10	정○○ 30	이○○ 10	김○○ 30	서○○ 10	이○○ 10	이○○ 10	
실시간 DGPS 기반환경 구축 및 Assited-GNSS 인프라 기술 고도화 연구(Ⅰ)	14. 8.14. ~ 15. 2.13.	하○○ 20	김○○ 20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인프라 고도화 기술개발 연구(2차년도)	14.10. 1. ~ 15. 6.30.	차○○ 50	이○○ 75	이○○ 95	강○○ 95	연○○ 95	허○ 95	김○○ 65	이○○ 100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개도국 진출을 위한 지원 체계 개발	14.10. 1. ~ 15. 6.30.	허○ 53	최○○ 9	이○○ 17							
미래 인터넷 기술 기반 공간정보 융합 및 지능화 기술 개발	14.10.15. ~ 15. 6.15.	이○○ 4	허○ 6	이○○ 6	강○○ 5	연○○ 5					
연속지적도 관리체계 개편 방안 연구	14.10.29. ~ 15. 3.31.	배○○ 0									전체위탁
스마트도시 구축 공간데이터 통합기술 개발	1. 1.~6.30.	송○○ 70	곽○○ 30								
실시간 DGPS 기반환경 구축 및 Assited-GNSS 인프라 기술 고도화 연구(Ⅱ)	15. 2.14.~16. 2.13.	하○○ 20	김○○ 10								
세계측지계 지원 플랫폼 개발(Ⅱ) - 지적분야 세계측지계 변환을 중심으로 -	3. 1. ~ 6.30.	남○○ 30	강○○ 15	이○○ 20	정○○ 20	김○○ 15					
LX 경영수익성 분석	3. 1. ~ 8.31.	최○○ 53	임○○ 20								
국토정보 통합조사 방안 연구	3. 1. ~ 8.31.	정○○ 40	박○○ 30	이○○ 30							
지하공간정보통합관리방안연구 - LX 역할을 중심으로 -	3. 1. ~ 8.31.	배○○ 40	신○○ 30	서○○ 30							
공간정보 표준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	3. 1. ~ 10.31.	정○○ 30	이○○ 20	곽○○ 20	이○○ 20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참여○○원									비고
		PM	참여자								
			참여비율(5)								
비콘을 활용한 시설물관리 시스템개발	3. 1. ~ 12.31.	차○○ 15	연○○ 30	강○○ 15	허○ 15	이○○ 15	이○○ 10				
공간정보 UFO 엔진개발	3. 1. ~ 12.31.	남○○ 30	이○○ 35	김○○ 35							
LX 위성측위 인프라 실용화 방안 연구(Ⅱ)	3. 1. ~ 12.31.	하○○ 35	김○○ 30	정○○ 20	강○○ 15						
도로명주소 활용 전략분야 조사·분석	3.12. ~ 8.31.	이○○ 15	김○ 15	신○○ 15	이○○ 15	김○○ 30	엄○○ 10				
도로대장 전산화 개선방안 마련 연구	3.16. ~ 8.12.	정○○ 50	배○○ 30	박○○ 20							
빅데이터를 활용한 LX비즈니스 모델 연구	3.17. ~ 6.16.	임○○ 12	김○ 9	정○○ 7	배○○ 7	최○○ 7	정○○ 7				
급변통일에 대비한 북한지역 국토정보구축 실험 사업 연구	4. 1. ~ 9.30.	임○○ 30	이○○ 20	이○○ 10							
LX 경영평가 계량지표 개발	4. 1. ~ 9.30.	이○○ 30	이○○ 10								
국가공간정보 표준정책지원 연구	4. 1. ~ 12.31.	이○○ 30	정○○ 20	곽○○ 20	이○○ 30						
2015년 국가공간정보 표준화 연구	4. 3. ~ 11.28.	김○ 5	이○○ 30	정○○ 5	정○○ 25	곽○○ 15	이○○ 10				
지적기준점 관리 품셈연구	5. 1. ~ 8.31.	이○○ 30	이○○ 20								
공공데이터 개방요구에 따른 LX 대응전략	5. 1. ~ 9.30.	신○○ 30	이○○ 10								
토지정보와 건물정보의 통합관리 방안	7. 1. ~ 12.31.	정○○ 45	박○○ 35								
지적측량업무량 예측모델 연구(Ⅰ)	7. 1. ~ 12.30.	이○○ 30	이○○ 20	이○○ 10							
2015년도 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보수 -기본도를이용한도로명주소안내도자동전환방안-	5.13. ~ 10.12.	김○ 10	배○○ 25	박○○ 18	신○○ 18	이○○ 18					

감 사

권 고

제 목 연구성과의 현업적용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원 ○○○○실
내 용

「연구개발규정」제32조(연구성과의 활용촉진 등) 제1항에 “○○○장은 연구개발보고서 등의 연구성과가 현업부서에서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고 되어 있고, 제4항에 “○○○장은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실용화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고 되어있다.

그리고 「연구개발규칙」 제45조(연구결과의 반영 및 활용) 제2항에 “○○○장은 연구성과에 대하여 활용부서를 선정하여 알릴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현업부서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고 되어있다.

□□□□□□원(이하 “○○원” 이라 한다.)은 우리공사의 Think Tank로서 업무와 연계되는 기술·연구 개발과 공사의 중장기 전략에 부응하는 연구개발을 통하여 미래 먹거리 창출 등 막중한 임무를 가진 기관으로서 ○○○원에서 도출된 연구성과는 공사의 중요한 자산으로서 체계적으로 관리·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간 ○○○원은 [붙임 6]현황과 같이 연구성과발표회, 학술회 등을 통해 연구성과를 전달하려는 노력은 하였으나, 연구성과에 대하여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업부서와 협의하여 현업적용 및 실용화를 위한 노력은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연구결과에 대한 실용화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으며, 현재까지 연구의 성과가 본사에 이관된 사례를 찾기가 힘든 경우가 있다.

따라서 연구성과는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본사로 이관되어야 하고 본사에서의 평가결과 피드백을 통한 연구의 연속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래서 연구성과가 공사의 신규사업 발굴, 정책결정과 기술활용에 활용되고 그 결과가 다시 연구원으로 피드백되는 연구사이클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원장은 ○○○○원 개원이후 현재까지 수행한 연구성과 전체를 분석하여 우리 공사에서 활용 가능한 연구성과를 선별하여 공사에 제공하고, 지속적인 피드백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6]

[□□□□□□원 연구성과 활용 현황]

2013년도

(금액단위: 만원)

연구과제명	수행 방법	연구기간		담당자 (PM)	예산 금액	연구성과 활용 내역 (현업적용 및 성과활용 촉진 활동 등)	증빙자료 (관련문서번호)
		계약	완료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조정 방안에 관한 연구	일부위탁	1. 1.	10.31.	김○	9160	본사-□□□□□처 일필지용TOSS에 경계미세조정SW탑재 활용 지적재산권 등록, 경계조정방안관련교육실시	○○○○실-179 (2014.02.06.)
독일 지적기반 공간정보 제도에 관한 연구	자체수행	1. 1.	10.31.	임○○	7624	없음	
해양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	일부위탁	1. 1.	12.31.	김○	1,3940	지적재산권등록 지적업무 해양적용을 위한 공동학술대회 개최	
한국형 3D 지적의 국제 표준화를 위한 연구	자체수행	1. 1.	12.31.	신○○	1,0007	2013FIG LADM 워크숍에서 지적재조사 모델기반 한국형3D 지적사례 발표	
GPS정밀측위정확도 향상을 위한 최신모델적용 연구	자체수행	1. 1.	12.31.	강○○	8736	전국 GPS 담당자 workshop에서 소개	
다목적 지적을 위한 공간정보 융·복합기술 개발연구	일부위탁	1. 1.	12.31.	이○○	1,7798	* 2014 스마트 엑스포 전시물 지원 *(구)□□□□단 신규사업 아이디어 발굴지원	2014.1.16. ○○○
기본과제 6건							
‘13 지적측량 업무 프로세스 개선 계획(안) 연구	일부위탁	1. 1.	10.31.	김○	9510	업무프로세스 개선(안)제안, 2014년 후속연구추진 지적재산권등록	
토달측량시스템 실시간 영상시스템 적용방안		1. 1.	10.31.	김○○	1431	없음	
해외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수주 전략 용역 연구		1. 1.	10.31.	김○○	4950	해외사업부 사업수행자료 사용	
북한지적 인프라 현황 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및 갱 신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 연구	일부위탁	1. 1.	12.14.	임○○	7619	평양 및 개성지역의 위성영상분석	
FTA를 활용한 공간정보산업 분야 서비스 모델수립	일부위탁	1. 1.	12.31.	이○○	6540	국토교통분야 통산산업 포럼 및 워크샵(중국, 터키, 뉴질랜드, 베트남 등 지적 및 공간정보분야 입장 발표 및 요구사항 건의)	
CEO 경영정책 연구보고서		3. 1.	7.30.	전○○	3040	CEO 정책결정 참고자료 제시	
토지등록제도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 정리_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토지행정		3. 1.	8.30.	차○○	3000	보고서 번역 배부, 배포(100권)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따른 BPR/ISP 외부용역	일부위탁	5. 2.	11.16.	김○○	3,0000	본부 워크숍 연구성과 발표	
지적측량 분야 GPS 효율성 향상을 위한 PPP-RTK 기술에 관한 연구	일부위탁	5.20.	12. 14.	강○○	7500	SBS와 연구결과 공유 및 사업화 협의에 사용	
스마트 재해관리 시스템 개발	일부위탁	5.29.	10.26.	연○○	6390	□□□□단 ‘침수흔적 관리시스템’ 기술지원	
국가 기반시설 디지털 기반을 위한 연구 용역	전체위탁	5.29.	10.26.	정○○	4590	<출장 중 확인불가>	
공간정보 기반 농수산물 재배현황 파악	전체위탁	5.29.	12.25.	양○○	6909	□□부, □□부 정책제안	
범죄 공간정보 활용 위치 추적	일부위탁	6.17.	11.14.	이○○	6161	□□청, SP**** 자문 및 보고서 제출	
국토공간 이용현황 조사를 통한 지가조사 체계 개선방안	일부위탁	6.17.	12.31.	이○○	6817	토지특성조사 업무의 공사 인력활용성 제고	
UN 환경문제(기후/녹색성장) 연구	전체위탁	6. 4.	11. 1.	배○○	5700	공사의 공간정보분야 업무확대 방향 제시	
공사의 기술역량 강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확충방안	일부위탁	6. 4.	12. 1.	전○○	7200	경영 환경변화에 따른 기술경영체계 제시	
공간정보산업 해외원조사업 활용 활성화 전략 연구	전체위탁	6. 4.	9. 2.	이○○	4318	□□□□부 요구사항에 적합한 비용으로 해외사업 수행시 참고함	
공간정보 취득용 GNSS 통합 디바이스 개발 연구	일부위탁	7. 1.	11.30.	강○○	9690	N*** 행사에 전시	
역사문화지도 연구	일부위탁	7. 9.	12. 5.	현○○	4775	□□□□단 신규사업 아이디어 발굴지원	
지적분야 단독법안 마련	전체위탁	8. 1.	11.28.	이○○	3864	지적측량과 지적제도 분리를 위하여 지적공부에 관한 법 확산 제시	비공개 처리
지적분야 자격제도 개선 연구용역	전체위탁	8. 1.	12.28.	서○○	5157	지적분야 자격검증제도 개선	
정사항공 영상(5cm)을 활용한 세계측지계 전환 및 지적경계 재 확정 방안	전체위탁	8. 1.	12.28.	정○○	7595	도로명 주소 기본도 기반 LX맵 데이터 구축연구에 정사영상 활용(○○○○○○○실) 영상을 이용한 지적재조사 활용방안, □□□□□처 제공	
지적측량성과 검사제도 개선방안	전체위탁	8.13.	12.30.	김○	3846	□□부 정책과제, 검사제도 개선방안 제출	
국토정보 통합조사 및 성과품질 제고를 위한 연구 용역	전체위탁	8.30.	14. 1.26.	이○○	4,7500	공사 비전 설정, 중장기 전략수립, 사업다각화에 활용	비공개 처리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선행사업 성과분석 연구	자체수행	9.23.	14. 3.31.	강○○	9450	전국 지적재조사 담당자 기술지원	
고해상도 영상 기반의 실감자적 콘텐츠 구축 및 지적재조사 활용연구	일부위탁	9.25.	12.23.	강○○	4780	지적재조사 □□처에 연구결과 이전	
창조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간정보생태계 활성화 전략 연구	전체위탁	9.25.	14.3.23.	이○○	7000	공간정보 생태계구축방안제시(□□부) 국토정보정책관실	
공간정보 SW산업 육성을 위한 인증체계 구축	자체수행	11. 1.	14.5.31.	정○○	9000	□□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기관 인증	
정책과제 28건							
지하공간정보의 등록방안에 관한 연구	자체수행	1. 1.	6.30.	임○○	4700	공사가 지하공간을 측량하기 위한 법적 방법 제시	
초경량 무인항공기 성능고도화 및 운영관리시스템 개발	일부위탁	5. 1.	8.31.	이○○	5530	* (구)□□□□단 기술지원(UAV 활용한 발작물 실태조사 시범사업) * □□□□본부 기술지원 - 솔외성지촬영	○○○○단-4648호 (2013.11.4.) ○○○○단-5579호 (2013.12.27.)
해외사업 관리시스템 구축	전체위탁	5.13.	10.19.	이○○	1761	글로벌사업처 지원	
공간정보 기반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NS 센터 시스템 개선연구	자체수행	6. 1.	10.31.	이○○	2200	NS센터에서 보고서 활용, NS센터 홈페이지 개제	
공간정보 정책기관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연구	전체위탁	6.24.	9.22.	정○○	5227	“공간정보 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심포지엄(‘13.9.10)” 발표 “□□□□학회 추계학술대회(‘13.9.27)” 발표	○○○○실-1121
국토공간정보 융복합 활용 촉진을 위한 추진전략 수립	전체위탁	6.24.	12.21.	정○○	1,1227	본사 □□□□실 활용(기조실에서 연구에 직접 참여)	
글로벌 경쟁지표 개발	자체수행	7. 1.	11.28.	곽○○	990	본사 □□□□□□처(□□자료 사용)	
국가 국토정보 관련산업 진흥 육성방안 연구	전체위탁	7. 8.	11. 5.	이○○	5710	국토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공사의 역할과 민간과의 협력방안 제시	
해외 지적정보 DB 구축 사업	전체위탁	7.19.	11.15.	김○○	8200	□□□□부 사업 예비자료	
지적측량수수료 체계개선 연구과제 수행 요청	전체위탁	7.24.	12.20.	김○	4136	지적측량수수료의 정당성 제시(□□부-> 감사원 대응자료)	
고해상도 영상기법을 이용한 4대강 유역 토지변화 분석	전체위탁	7. 24.	12.20.	김○	5091	지적측량대상확대: 법정개정 4대강 유역 토지변화 □□부에 제시	

DMZ 지적정보의 효율적 구축방안	자체수행	10. 15.	12. 14.	이○○	39	□□□□&(구)□□□□단 신사업 발굴 정책지원	□□□□-872호(2013. 10. 7.) ○○○○실-1091호(2013. 10. 7.) ○○○○실-1113호(2013. 10. 10.)
무인비행선을 활용한 유적지3D 공간정보구축방안연구	전체위탁	11. 1.	12. 30.	현○○	2455	(구)□□□□단 UAV활용 기술, 정책지원	
수시과제 13건							
2012 사할린 한인묘 현황 파악	자체수행	12. 10. 2.	5. 31.	김○○	2,7500	□□□□산하 □□□□위원회 자료제공	
공간정보 Social Platform 구축 및 활용정책 개발(2차)	자체수행	12. 11. 12.	6. 29.	정○○	5,3333	논문개재 3건, 논문발표 5건, 홍보1건, 정책제안 2건, 소프트웨어 등록 1건, 특허출원 2건	□□□□□□□□ 진흥원 수탁과제
국유재산(유휴지) 실태조사 최적화 방안 연구	자체수행	12. 11. 29.	2. 28.	이○○	4570	(구)□□□□단과 공동수행(관련 자료 이관)	□□□□실-1247호(2012. 12. 10.) □□□□단-5100호(2012. 12. 2.)
세계측지계 좌표전환에 따른 학술연구용역	자체수행	12. 12. 13.	2. 10.	김 ○	867	□□부-□□시 수탁과제	
세계측지계 전환 선행사업에 따른 연구용역	자체수행	12. 12. 21.	2. 10.	김 ○	848	□□부-□□시 수탁과제	
‘12 도로명주소 위치 정확도 개선사업(1차년도)	자체수행	12. 6. 19.	2. 28.	양○○	1,5774	○○부 도로명 사업수립을 위한 근거 제공	
‘13 도로명주소 위치 정확도 개선사업(2차년도)	자체수행	1. 1.	6. 30.	양○○	1,5774	○○부 도로명 사업수립을 위한 근거 제공	
다중수신국 네트워크 운영지원 및 위성항법 인프라 신뢰성 제고방안	자체수행	1. 10.	6. 30.	강○○	9000	해당 지사에 인프라 운영비 제공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인프라 고도화 기술개발 연구	자체수행	10. 1.	14. 9. 30.	차○○	2.8500	□□부 □□□□□□□□□□원 국책과제임	
건축물 정위치 등록에 관한 연구	자체수행	11. 25.	14. 4. 23.	정○○	3888	□□□□□□위원회 수탁과제 논문개재1건(○○○○○○지, 2014. 10)	
국토조사 관련 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자체수행	4. 3.	12. 29.	양○○	1,1850	□□□□□□원, □□부 정책제안	
풍수해 위험도가 반영된 개별보험 요율산정 및 지도개발	자체수행	5. 1.	14. 4. 30.	이○○	1100	(구)□□□□단 “침수흔적관리시스템” 연계(관련 자료전달)	

2013년도 위치찾기수단의 국제표준화 대응방안연구	자체수행	5.21.	12.30.	이○○	5760	□□부 정책연구(국제회의대응ISO)-도로명주소 국제표준화정책지원	
공간정보기반의 Social Platform 서비스구축(3차)	자체수행	6. 3.	14. 6.29.	정○○	5,3333	논문개재3건, 논문발표 5건, 정책제안 3건, 소프 트웨어등록 1건, 특허출원 3건	□□□□□□□□ 진흥원 수탁과제
경계점표지등록부 작성 및 지상경계점 관리방안 연구(2과제)	자체수행	6.10.	14. 1. 5.	임○○	6990	□□부수탁과제로 지상경계점 설치의 예외를 인정 하는 정책 채택됨	
2013년도 국가 공간정보 표준화 사업	자체수행	6.13.	14. 1. 8.	이○○	3,3500	국가공간정보 표준화 정책수립(□□부, 진흥과)	
이집트 국가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	공동연구	6.24.	11.29.	송○○	1,8200	○○원 수익사업 활용	NIPA 과제번호 S0217-13-1002
SOC 사업 연계를 통한 지적재조사사업 효율성 증 대방안(3과제)	자체수행	7.19.	14. 1. 5.	양○○	5164	지적재조사사업수탁과제 지적재조사 사업에 활용	
지적재조사의 사업수행 개선방안 연구(4과제)	자체수행	7.19.	14. 1. 5.	임○○	3438	지적재조사 사업 수탁과제, 재조사 수행시 예산절 감 방안 제시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효과 분석에 관 한 연구(1과제)	자체수행	8. 1.	14. 1. 5.	양○○	6864	지적재조사 사업 수탁과제 지적재조사 사업에 활용	
지적재조사사업 총괄(1-4과제)	자체수행	8. 1.	14. 1. 5.	정○○		□□□□부 □□□□□기획단 수탁과제 지적재조사 사업에 활용	
카자흐스탄 NGIS 구축 방안 연구	공동연구	8.12.	14. 4. 8.	송○○	7700	○○원 수익사업 활용 카자흐스탄과 중장기 협력체계 구축 (예: 칠레 출장 후 사업으로 연계 사례)	□□부 공고번호 제2013-352호
GGIM-KOREA 포럼 연차보고서 용역	자체수행	9.25.	12.14.	이○○	1900	UN GGIM-KOREA 추진 기반마련(○○원 정책지원)	
수탁과제 23건							
지적측량의 민간개방에 따른 용역대가의 적정성연 구	전체위탁	12.11.12	4.1.1	김 ○	4050	□□부 정책과제, 지적측량은 용역대가가 아니라 수수료임 □□부에 제시	
세계측지계 기반 지적성과의 평면투영좌표체계연 구	전체위탁	12.11.26	4.25.	강○○	2850	좌표변환 작업지침에 반영(□□부)	
위탁과제 2건					6900		

2014년도

(금액단위: 만원)

연구과제명	수행방법	연구기간		담당자 (PM)	예산 금액	연구성과 활용 내역 (현업적용 및 성과활용 촉진 활동 등)	증빙자료 (관련문서번호)
		계약	완료				
웹기반 세계측지계지원 플랫폼 개발	자체수행	1. 1.	12.31.	남○○	3870	지적재조사 세계측지계변환사업 기준점 관리 적용(30,000점) 공사 세계측지계변환 업무시스템 지원	
지적재조사측량을 위한 광역 실시간 위성측량 실 용화 연구	일부위탁	1. 1.	12.31.	김○○	2300	연구결과인 GNSS N-RTK 프로그램은 향후 공간정보엔진 개발시 접목하여 활용 예정	
공간정보분야의 발전을 위한 법제 개선 연구	자체수행	1. 1.	11.30.	임○○	3560	공간정보분야의 발전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제시	
지적제도의 해양적용에 관한 연구 - 해양공간관리의 법제화를 중심으로 -	일부위탁	2. 1.	12.29.	김○	1,1980	지적재산권 등록 법안제시, □□부 2015년 중점추진과제	
3D 지적의 국제 표준화를 위한 연구	자체수행	3. 1.	11.31.	정○○	1,0097	LADM기반 3D지적표준 구축	
공공정보 기반의 주제도 제작 방안	일부위탁	3. 1.	9.30.	정○○	4914	연구성과발표회 2회발표, 경기본부 워크숍발표 1회 학술지게재1건 확정(지적과 공간정보 '15.6)	
제안과제 6건							
공간정보서비스 품질평가 추진방안	일부위탁	13.11. 1.	14. 8.10.	정○○	2,9324	본사-□□□□실, □□□□□□처에서 □□부의 지자체공간정보서비스조사 업무에 활용	○○○○실-1233 (2014.8.12.)
공간정보소프트웨어산업육성을위한인증체계구축 연구(ns센터)	일부위탁	13.11. 1.	14. 8.10.	정○○		□□부 (구)□□□□□□과에 보고서 제출	
국산 공간정보 SW산업 육성을 위한 인증체계 구축 연구(비공개) -기관운영을 중심으로-	자체수행	13.11. 1.	14. 8.31.	남○○	874	「□□부 KLIS 품질인증 기관 지정」 정책방향 제시	
지적측량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1x 대안사업 연구)	자체수행	13.12.23 .	3.12.	차○○		□□□□실, CEO 정책보고	
TOSS와 SIP간 지적확정측량성과 연계 SW 매뉴얼 (비공개)	자체수행	1. 1.	6.30.	이○○	1070	본사-□□□□처에 연구 개발된 연계SW 소스자료를 이관	○○○○실-884 (2014.06.25.)

공간정보 취득용 GNSS 통합디바이스 개발 (GPS와 IMU결합을 통한 GPS차폐지역 내 측위 성능 강화)	자체수행	1. 1.	12.31.	이○○	1,5785	없음	
LX 위성측위 인프라 고도화 및 시스템 안정화 연구	자체수행	1. 1.	12.31.	하○○	2,6085	* 위성측위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전국 관측망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LX 네트워크 RTK 서비스 시험운영(사용자 기반 서비스 활용 매뉴얼 배포) * □□ NASA와 공동 운영을 위한 상시관측소 구축(NASA 장비 지원)	○○○○실-1184 (2014.08.06.)
통일 후 북한지역의 토지권리의 분배방안에 관한 연구	일부위탁	1. 1.	12.31.	임○○	7638	□□□, □□, □□□, □□의 토지관련 법률 조명	
지상라이다 측량 표준품셈 산정방식의 고도화 연구 -문화재 적용을 중심으로-	자체수행	3. 1.	11.31.	정○○	7760	지상라이다 측량 품셈 산정 예시 제안(본사 □□□□단)	
국제주소 랜더링 표준을 위한 주소체계 분석	자체수행	3. 1.	11.31.	곽○○	5000	국제공간정보표준(ISO/TC211)제안서 제출	
주요 사업범주 글로벌 경쟁지표 개발	자체수행	3. 1.	11.30.	최○○	4550	2014년 경영평가자료 활용(□□□□□□처)	
지적측량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1과제: 필지 정형화 사업)	자체수행	3.13.	3.31.	차○○		□□□□실(현 □□□□실)정책과제 □□□□실 사업개발에 활용	○○○○실-391
지적측량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2과제: 지목현실화 사업)	자체수행	3.13.	3.31.	김○		□□□□실 및 □□부에 정책제안	“
지적측량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3과제: 국공유지 실태조사 측량)	자체수행	3.13.	3.31.	정○○		□□□□실(현 □□□□실) 정책과제 □□□□실 사업개발에 활용	“
해외사업 지원을 위한 컨설팅 툴 제작	자체수행	4. 1.	12.31.	송○○	0	○○○○부 해외사업 컨설팅 업무에 활용	
도로명주소기본도 기반의 LX 맵 구축 및 서비스 방안 연구	자체수행	5. 1.	10.31.	신○○	3140	2015년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보수 사업의 참고자료로서 활용	
통일대비 북한지역 국토정보 관리방안 연구(비공개) - 북한지역 지적원도 디지털화 추진방안을 바탕 으로 -	일부위탁	5. 1.	12.31.	김○	1,0000	□□부와 □□부에 정책제안 예산확보	
대규모 국공유지 디지털지적정리(세계측지계 변환) 구축방안	자체수행	6. 1.	11. 3.	강○○	2600	□□부에 정책 제안	

고지도상의 독도·동해 표기현황 분석 연구	자체수행	6. 2.	8. 10.	정○○		□□□□부 정책연구로 수행(□□□□부에 제출)	○○○○실-1380
LX 빅데이터 시범사업 -빅데이터기반의스마트관광정보구축-	일부위탁	6. 11.	12. 10.	배○○	1,0000	2015년 2월부터 □□ □□시 관광 홈페이지에서 대국민서비스 중, 지식재산권 확보(특허출원)	
통일을 대비한 외국의 토지등록제도에 관한 연구 -베트남토지등록제도를중심으로-	일부위탁	7. 28.	12. 24.	임○○	7570	2003년과 2013년 베트남 토지법 비교 분석	
시스템다이나믹스를 활용한 지적측량 업무량에 관 한 연구	자체수행	8. 11.	12. 30.	최○○	7240	2015년 Word Bank annual conference에서 발표 논문1건 시스템다이나믹스학회('15.5)	
지적공부의 공신력 향상을 위한 지목체계 개편 (시범사업 포함)방안에 관한 연구	일부위탁	8. 12.	15. 1. 11.	김○	8191	지목체계개편방안 □□부에 정책제안	
정책과제 23건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인프라 고도화 기술개발 연구 (1차 년도)	공동수행	13. 10. 1.	14. 9. 30.	차○○	2,8500	□□부 □□□□□□□□진흥원 국책과제임(수탁)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인프라 고도화 기술개발 연 구(2차 년도)(2015년 이월)	공동수행	13. 10. 1.	15. 6. 30.	차○○	7,6500	□□부 □□□□□□□□진흥원 국책과제임(수탁)	
건축물 정위치 등록에 관한 연구	자체수행	13. 11. 25.	14. 4. 23.	정○○	3888	2013년 과제 목록에 작성	
풍수해 위험도가 반영된 개별보험 요율산정 및 지 도개발(1차년도)	자체수행	13. 5. 1.	14. 4. 30.	이○○	1100	(구)□□□□단 “침수흔적 관리시스템” 과 연계	
공간정보 기반의 Social Platform 서비스 구축 (3차 년도)	공동수행	13. 6. 3.	14. 6. 29.	정○○	5,3333	<중복>	
카자흐스탄 NGIS 구축 방안 연구	공동수행	13. 8. 12	14. 4. . 8.	송○○	7700	○○원 수익사업 활용 □□□□단과 중장기 협력체계 구축 (예: □□ 출장 후 사업으로 연계 사례)	□□부 공고번호 제2013-352호
풍수해 보험 요율을 고려한 보험지도 작성 (2차년도)(2015년 이월)	자체수행	14. 5. 1.	15. 4. 30.	이○○	4868	“침수흔적 관리시스템” 과 연계	

공간정보 기반의 Social Platform 서비스 구축 (4차 년도)(2015년 이월)	공동수행	14.7. 1.	15. 6.30.	정○○	3,6667	논문개제3건, 학술발표 4건, 정책제안 2건, 홍보 1건, 소프트웨어등록 2건, 특허출원 2건, 특허등 록 4건	□□□□□□□□ 진흥원 수탁과제
다중네트워크 수신국 운영 및 기구축 기준국 활용 가능성 검토(2015년 이월)	자체수행	14.8. 1.	15. 7.31.	하○○	9700	해당 지사에 인프라 운영비 지원	
2014 국가공간정보 표준화 연구	자체수행	3.28	12.22.	이○○	3,1100	국가 공간정보 표준화 정책수립(□□부, □□과)	
행정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상시관리체계 구 축방안 연구용역	일부위탁	4.23.	9.23.	임○○	4000	총괄청인 기재부의 국유 부동산 관리 업무에 공 사의 참여 가능성 확대, 국유재산법 개정안 제시	
등록전환 세계측지계 도입방안 연구	자체수행	4.29.	11.24.	강○○	3420	□□부에 정책 제안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효율적 유지관리방안 연구	자체수행	5.23.	12.19.	이○○	9588	도로명판 유지관리를 위한 조사업무 참여 근거 제시	
국제표준 기반의 디지털지적 표준모델 구축 연구	자체수행	5.27.	11.22.	정○○	7300	국가 지적정책 및 통합 계획 수립(□□부, □□과)	
국가공간정보센터 유통시스템 발전방안 연구	일부위탁	5.28.	12.12.	정○○	9570	□□□□부-**센터에 공간정보유통에 관한 정책방향 제시	○○○○○○○실 -193 (2015.2.2.)
2014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및 활용패키지개발	자체수행	6.13.	11.12.	서○○	4327	지적분야의 필수 직무 능력 단위 개발 및 정립	
2014 위치찾기 수단의 국제표준화 대응방안 연구	자체수행	6. 2.	12.29.	이○○	6200	국제표준화 대응 방안 수립(□□부, □□□□과)	
실시간 DGPS 기반환경 구축 및 Assited-GNSS 인프 라 기술고도화 연구(2015년 이월)	자체수행	8.14.	15. 2.13.	하○○	2000	국가 R&D 참여 및 기술력 확보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개도국 진출을 위한 지원 체 계 개발(2015년 이월)	자체수행	10. 1.	15. 6.30.	허○	9700	□□부 □□□□□□□□□□원 국책과제임(수탁)	
미래 인터넷 기술 기반 공간정보 융합 및 지능화 기술 개발(2015년 이월)	공동수행	10.15.	15. 6.15.	이○○	6000	과제 진행 중(기획과제)	

수탁과제 20건(이월과제 7건 포함)							
도로명주소 안내도 활용방향 연구	전체위탁	2.18.	6.24.	곽○○	4500	도로명 주소 안내도 활용방안 정책 수립 및 제언(□□부 □□□□과)	
공간정보 국외개방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	전체위탁	4.16.	9.12.	서○○	3500	글로벌 기업의 국내 공간정보 시장 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최소화 및 대응방안 제시	
LX 빅데이터 추진전략 수립	전체위탁	8.12.	12.10.	배○○	1,5670	빅데이터 환경하에서 공사의 대응전략 제시,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사의 비즈니스 모델 발굴시 참고	
LX 빅데이터 기반구축 사업	전체위탁	8.12.	12.10.	신○○	2,5540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공사 경영 효율성 향상(효과적 경영지원 모델, LX 통합 공간정보 관련)	
민간일자리 창출 및 상생협력방안 연구	전체위탁	8.13.	11.12.	이○○	1356	공사의 상생협력 비전 수립 및 공공성 확보, 경평자료	
국가공간정보시스템 관리체계 개편 연구용역	전체위탁	8.27.	11.26.	정○○	9900	□□부 산하 공간정보 서비스 통합 방안 제시(□□부, □□과)	
연속지적도 관리체계 개편 방안 (2015년 이월)	전체위탁	10.29.	15. 3.31.	배○○	9800	연속지적도 관리체계 개선 및 품질 향상, 활용 활성화 및 시스템 연계방안 등 제시 연속지적도 관련 업무를 공사에서 수행하기 위한 토대 마련	
위탁과제 7건(이월과제 1건 포함)							

2015년도

(금액단위: 만원)

연구과제명	수행방법	연구기간		담당자 (PM)	예산 금액	연구성과 활용 내역 (현업적용 및 성과활용 촉진 활동 등)	증빙자료 (관련문서번호)
		계약	완료				
LX 경영수익성 분석	일부위탁	3. 1.	8.31.	최○○	3404	현재 진행 중	
국토정보 통합조사 방안 연구	자체수행	3. 1.	8.31.	정○○	966	현재 진행 중	
지하공간정보통합관리방안연구 - LX 역할을 중심으로 -	자체수행	3. 1.	8.31.	배○○	3688	현재 진행 중	
비콘을 활용한 시설물관리 시스템개발	자체수행	3. 1.	12.31.	차○○	3314	현재 진행 중	
공간정보 UFO 엔진개발	자체수행	3. 1.	12.31.	남○○	1,4317	지적재조사사업 사업지구 경계조정 적용 예정	
세계측지계 지원 플랫폼 개발(Ⅱ) - 지적분야 세계측지계 변환을 중심으로 -	자체수행	3. 1.	6.30.	남○○	3694	2015년 세계측지계변환 선행 사업 적용 예정 플랫폼 Open예정 (8월중)	
LX 위성측위 인프라 실용화 방안 연구(Ⅱ)	자체수행	3. 1.	12.31.	하○○	1,8484	* LX 위성측위 인프라를 활용한 GNSS 측량 기술 시험 운용 * □□□□실 주관 전국 GPS 담당자와 공유	
급변통일에 대비한 북한지역 국토정보구축 실험 사업 연구	일부위탁	4. 1.	9.30.	임○○	6136	현재 진행 중	
제안과제 8건							
스마트도시 구축 공간데이터 통합기술 개발	공동연구	1. 1.	6.30.	송○○	8748	3차원 지적제도 및 기술도입을 위한 연구 (3DCDM 모델 활용)	진행 중
공간정보 표준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	자체수행	3. 1.	10.31.	정○○	8490	현재 진행 중	
빅데이터를 활용한 LX비즈니스 모델 연구	자체수행	3.17.	6.16.	임○○	6831	현재 진행 중	

LX 경영평가 계량지표 개발	일부위탁	4. 1.	9.30.	이○○	4180	현재 진행 중	
공공데이터 개방요구에 따른 LX 대응전략	일부위탁	5. 1.	9.30.	신○○	5308	현재 진행 중	
지적기준점 관리 품셈연구	일부위탁	5. 1.	8.31.	이○○	3600	현재 진행 중	
토지정보와 건물정보의 통합관리 방안	일부위탁	7. 1.	12.31.	정○○	4014	현재 진행 중	
지적측량업무량 예측모델 연구(Ⅰ)	일부위탁	7. 1.	12.30.	이○○	3680	현재 진행 중	
HMS 위탁운영 전략 마련 연구	전체위탁	계약일 +4개월			4000	현재 진행 중	
경영과제 9건							
국가공간정보 표준정책지원 연구	자체수행	4. 1.	12.31.	이○○	1,1000	현재 진행 중	
정책과제 1건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인프라 고도화 기술개발 연구(2차년도)	공동연구	14.10. 1.	15. 6.30.	차○○	7,4900	□□부 □□□□□□□□진행원 국책과제임(수탁)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개도국 진출을 위한 지원 체계 개발	자체수행	14.10. 1.	15. 6.30.	허○	9700	□□부 □□□□□□□□진행원 국책과제임(수탁)	
미래 인터넷 기술 기반 공간정보 융합 및 지능화 기술 개발	공동연구	14.10.15.	15. 6.15.	이○○	4000	과제 진행 중(기획과제)	
풍수해 보험요율을 고려한 보험지도 작성 (2차년도)	자체수행	14. 5. 1.	15. 4.30.	이○○	4868	“침수흔적관리시스템” 연계	
공간정보 기반의 Social Platform 서비스 구축 (4차 년도)	공동연구	14. 7. 1.	15. 6.30.	정○○	9500	현재 진행 중	

다중네트워크 수신국 운영 및 기구축 기준국 활용 가능성 검토	자체수행	14. 8. 1.	15. 7.31.	하○○	9700	기준국 설치 지사에 운영비 지원	
실시간 DGPS 기반환경 구축 및 Assited-GNSS 인프라 기술 고도화 연구(Ⅰ)	자체수행	14. 8.14.	15. 2.13.	하○○	2000	국가 R&D 참여로 기술력 확보	
수탁과제(이월) 7건							
실시간 DGPS 기반환경 구축 및 Assited-GNSS 인프라 기술 고도화 연구(Ⅱ)	자체수행	15. 2.14.	16. 2.13.	하○○	2000	국가 R&D 참여로 기술력 확보	
도로명주소 활용 전략분야 조사·분석	자체수행	15. 3.12.	8.31.	이○○	2157	현재 진행 중	
도로대장 전산화 개선방안 마련 연구	자체수행	15. 3.16.	8.12.	정○○	1950	현재 진행 중	
2015년 국가공간정보 표준화 연구	공동수행	15. 4. 3.	11.28.	김○	1,4447	현재 진행 중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연안도시 지역별 복 합원인(해수면 상승+태풍 등)의 홍수 취약성 평가기술 개발 및 대응 방안 연구 -기후변화에따른연안도시재해예측및관리시스템개발	공동수행	15. 5. 1.	19. 4.30.	이○○	3110	과제 계약 진행 중	
소방관서 출동배치 공간분석 연구	자체수행	15. 5. 1.	8.13.	허○	1500	현재 진행 중	
2015년도 지적분야 NCS 학습모델 개발	공동수행	15. 5.11.	10.30.	서○○	6450	진행 중	
지능형 자동차 인식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공개용 표준 DB 구축 및 평가시스템 개발	공동수행	15. 6.1.	20. 5.31.	강○○	연 3억예정	연구 착수 단계	
2015년도 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보수 -기본도를이용한도로명주소안내도자동전환방안-	공동수행	4.6.	10.31.	김○	6800	현재 진행 중	
수탁과제 9건							
연속지적도 관리체계 개편 방안 연구		14.10.29.	15. 3.31.	배○○	9800	현재 진행 중	
위탁과제 1건							

감 사

권 고

제 목 연구성과 계량화 및 평가 개선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원 ○○○○실
내 용

「연구개발규정」제28조(연구성과의 평가) 제1항에 “○○○장은 해당 연도의 연구성과에 대한 착수, 중간 및 최종평가를 해당 연도 12월31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고,

「연구개발규칙」제38조(연심회 평가시기 및 방법) 제3항에 “연심회 평가 등급은 5등급(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으로 한다.” 고 되어있고, 제4항에 “평점은 평가위원의 평정결과 중 과제별로 평균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고 되어있다.

또한 「같은 규칙」제45조(연구결과의 반영 및 활용) 제1항에 “연구과제 평가결과는 근무성적평정, 성과연봉산정 등에 반영한다.” 고 되어있다.

따라서 □□□□□□원은 연구과제 선정을 위해 연구과제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연구내용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연구심의회를 운영하는 등 연구성과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연구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는 연구원들의 근무성적평정 및 성과연봉산정 등에 반영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연구과제마다 참여 인원의 수, 예산의 투입정도, 중요 과업의 외부 위탁 유무, 연구 기간과 방법이 서로 달라 이를 고려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행 평가체계는 [붙임 7]의 평가항목과 같이 동일한 비중으로 점수를 부여하게 되어있어 평가가 공평하지 않을 수 있고, 좋은 평가를 받기위해 많은 예산 투입 또는 중요 사항 외부위탁 등의 방법에 치중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연구의 중요도, 인원수, 예산, 수익성, 연구기간과 방법 등을 고려하여 연구과제의 비중에 따른 계량화가 필요하고, 이를 연구과제의 선정과 평가에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조치할 사항

□□□□□□원장은 연구과제를 계량화하고 이를 연구과제의 선정과 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공정한 연구과제 선정과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7]

[연구과제 착수 평가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가척도				
			매우 미흡 (60)	미흡 (70)	보통 (80)	우수 (90)	매우 우수 (100)
1. 연구의 필요성 (20)	① 연구목적의 명확성	15					
	② 연구주제의 시의적절성	5					
2. 연구 개념·틀의 명 확성 (25)	③ 연구 관련 주요 개념의 명확성	10					
	④ 연구 틀의 명확성	15					
3. 선행연구 검토의 충실성 (15)	⑤ 관련이론 및 선행연구 최근 동 향 파악 정도	10					
	⑥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독창성	5					
4. 연구방법의 적절성 (20)	⑦ 자료이용 및 방법론의 적절성	15					
	⑧ 연구수행체계 및 절차의 합리성	5					
5. 연구결과 도출의 가능성 (10)	⑨ 연구결과 도출의 가능성	10					
6. 연구결과 기대효과(10)	⑩ 학술적 기여도	5					
	⑪ 정책활용 가능성	5					
총 점		100					

[연구과제 중간 평가서]

중간 단계 평가 (100)	세부항목	평점										점수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 량	
		A+ (10)	A ⁰ (9)	B ⁺ (8)	B ⁰ (7)	B- (6)	C ⁺ (5)	C ⁰ (4)	D ⁺ (3)	D ⁰ (2)	E (1)	
연구목표 달성도(2)	◦계획대비 목표의 달성정도 * 탁월:목표달성 수준이 90% 이상 * 불량:목표달성 수준이 50% 미만											
연구개발 추진 과정의 적정성(1)	◦연구개발 추진방법의 적정성 - 연구윤리 준수 및 연구추진실적관리 적정성 * 탁월:추진방법이 매우 적정함 * 불량:추진방법이 매우 부적정함											
자원 활용의 적정성(2)	◦계획 대비 인력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 연구 성과도출을 위한 자원 활용 적정성 (참여○○원, 위촉○○원 및 연구예산 등) * 탁월:자원 활용의 적정성이 매우 우수한 경우 * 불량:자원 활용의 적정성이 매우 미흡한 경우											
경영개선 파급효과 및 활용정도(1)	◦경영개선의 기여도 - 로드맵 제시 여부,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 탁월:경제적 파급효과 및 활용범위가 매우 큼 * 불량:경제적 파급효과 및 활용범위가 매우 적음											
사업화 혹은 실용화 계획의 구체성(2)	◦사업화 혹은 실용화 계획의 구체성 * 탁월:사업화 혹은 실용화 계획이 매우 구체적임 * 불량:사업화 혹은 실용화 계획이 매우 불확실함											
기술환경 변화 및 개발목표의 점검(1)	◦기술 환경 변화 점검 및 개발목표 재설정 여부 * 탁월: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절하게 목표 재설정 * 불량:대처가 미흡하고, 목표 재설정 하지 않음 ※ 단, 기술 환경 변화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발목표에 대한 평가만 실시											
연구목표 달성 가능성(1)	◦연구 최종목표 달성 가능성 * 탁월: 목표 달성 가능성 매우 높음 * 불량: 목표 달성 가능성 매우 낮음											

[연구과제 최종 평가서]

목표달성도 평가 (30)	세부항목	평 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A+ (10)	A ⁰ (9)	B ⁺ (8)	B ⁰ (7)	B- (6)	C ⁺ (5)	C ⁰ (4)	D ⁺ (3)	D ⁰ (2)	E (1)
최종목표 달성도(1)	◦연구계획서에 제시된 당초 개발목표에 대한 달성 정도 * 탁월:목표달성 수준이 90% 이상 * 불량:목표달성 수준이 50% 미만										
연구개발 결과 성능수준(1)	◦개발기술의 기술력은 성능수준(자체평가 등) * 탁월:평가결과나 수준이 탁월 * 불량:평가결과나 수준이 매우 낮음										
연구개발 추진과정의 적정성(1)	◦연구개발목표달성을 위한 수행방법의 적정성 * 탁월:수행방법이 매우 적정함 * 불량:수행방법이 매우 부적정함										
목표달성도 평가 검토의견	소 계	점									

가치성 평가 (40)	세부항목	평 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A+ (10)	A ⁰ (9)	B ⁺ (8)	B ⁰ (7)	B- (6)	C ⁺ (5)	C ⁰ (4)	D ⁺ (3)	D ⁰ (2)	E (1)
연구성격 및 연구단계의 가치성(1)	◦연구성격(기초,공공,실용) 및 연구단계(기초,응용,개발) 의 가치성 * 탁월:연구성격 및 연구단계의 가치성이 매우 높음 * 불량:연구성격 및 연구단계의 가치성이 매우 낮음										
경영개선 파급효과(1)	◦경영개선의 기여도 - 개발기술을 활용한 경제적 파급효과 정도 - 개발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현업부서의 범위 * 탁월:경제적 파급효과 및 활용범위가 매우 큼 * 불량:경제적 파급효과 및 활용범위가 매우 적음										
사업화 혹은 실용화 계획의 구체성(1)	◦사업화 혹은 실용화 계획의 구체성 - 로드맵 제시 여부,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 탁월:사업화 혹은 실용화 계획이 매우 구체적임 * 불량:사업화 혹은 실용화 계획이 매우 불확실함										
투입자원의 적정성(1)	◦투입 인력 및 예산 적정성 - 연구가치에 대한 인력 및 예산 적정성 - 위촉○○원 활용 적정성 등 * 탁월:투입자원대비 기술가치가 매우 높은 경우 * 불량:투입자원대비 기술가치가 매우 낮은 경우										
목표달성도 평가 검토의견	소 계	점									

기술성 평가 (30)	세부항목	평 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A+ (10)	A ⁰ (9)	B ⁺ (8)	B ⁰ (7)	B- (6)	C ⁺ (5)	C ⁰ (4)	D ⁺ (3)	D ⁰ (2)	E (1)
기술의 혁신성(1)	◦개발기술의 신규성 혹은 발전단계 및 국내외 기존 기 술 대비 차별성 정도 * 탁월:개발기술의 신규성 및 차별성 정도가 매우 탁월 * 불량:개발기술이 보편적이고, 기존 기술과 차별성이 전혀 없음										
기술적 파급효과(1)	◦개발기술이 타 기술개발에 활용되는 정도 및 기반성 * 탁월:개발기술의 활용성 및 기반성이 매우 탁월 * 불량:개발기술의 활용성 및 기반성이 전혀 없음										
지식 재산권 성과(1)	◦특허 출원, 논문발표 및 기타 지식재산권 건수 및 수준(연 구기간 및 투입 연구비를 고려하여 평가) * 탁월:특허 출원, 논문발표 및 기타 지식재산권 실적이 매우 우수 * 불량:특허 출원, 논문발표 및 기타 지식재산권 실적이 매우 저조										
기술성 평가 검토의견	소 계	점									

감 사 권 고

제 목 연구심의회 운영 등 내부기준 미비

관 계 기 관 □□□□□□원 ○○○○실

내 용

□□□□□□원(이하 “○○원”이라 한다.)은 연구과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방법, 연구내용 등을 심의 하고, 연구결과를 평가 할 수 있도록 「연구심의회(이하 “연심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연구개발규칙」제31조(연심회 대상과제)에 “○○원에서 수행하는 모든 과제는 착수·중간·최종 연심회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구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과제 또는 과제의 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중간 연심회를, 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정책과제 또는 제안과제는 과제의 성격에 따라 연심회를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칙」제63조(회의)에 “모든 과제의 연심회는 착수, 중간, 최종으로 구분하여 개최하고, 과제유형, 과제기간 등에 따른 개최시기, 개최횟수와 그 밖에 연심회 운영, 심의·평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침으로 정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위 규칙에서 정한 연심회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별도지침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2014년도에 ○○원에서 수행한 수탁과제를 제외한 제안 및 정책과제 25개 연구과제 중 [붙임 8] 현황과 같이 연심회에서 착수·중간·최종 연구 수행을 모두 심의·평가한 과제는 10개뿐이고, 11개

과제는 비공개, 수시과제, 전부 위탁 등의 이유로 착수·중간·최종 연구 수행에 대한 연심회 개최를 생략하였다.

따라서 연심회를 생략할 수 있는 명확한 사유, 과제의 특성상 비공개로 추진하는 연구과제 등에 대하여 연심회 개최 여부 등에 대한 내부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연구개발규칙」제45조(연구결과의 반영 및 활용) 제1항에 따라 연구과제 평가결과는 근무성적평정, 성과연봉산정 등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연심회의 운영, 심의·평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조치할 사항

□□□□□□원장은 연구과제의 질적 향상과 연구과제의 결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연심회의 운영, 심의·평가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8]

[2014년 연구과제 수행 및 연구 심의·평가 현황]

(금액단위: 만 원)

구 분	연구과제명	예산 금액	수행방법	위탁기관	연구기간	연구 책임자	연구심의·평가			생략사유
							착수	중간	최종	
제안과제 (6)	웹기반 세계측지계지원 플랫폼 개발	3870	자체수행		1. 1.~12.31.	남○○	○	○	○	
	지적재조사측량을 위한 광역 실시간 위성측량 실용화 연구	2300	일부위탁	(주)○○○○○○○○○ 990	1. 1.~12.31.	김○○	○	○	○	
	공간정보분야의 발전을 위한 법제 개선 연구	3560	자체수행		1. 1.~11.30.	임○○	○	○	○	
	지적제도의 해양적용에 관한 연구 - 해양공간관리의 법제화를 중심으로	1,1980	일부위탁	○○○○○○○학회 (주)○○○○○○○ 8033	2. 1.~12.29.	김○	○	○	○	
	3D 지적의 국제 표준화를 위한 연구	1,0097	자체수행		3. 1.~11.31.	정○○	○	○	○	
	공공정보 기반의 주제도 제작 방안	4914	일부위탁	(주)○○○ 3800	3. 1.~ 9.30.	정○○	○	○	○	
정책과제 (6)	공간정보서비스 품질평가 추진방안	2,9324	전부위탁	○○○○법인 2,0324	13.11. 1.~ 8.10.	정○○	-	-	-	비공개 (○○○○실)
	공간정보소프트웨어산업육성을위한인증 체계구축 연구(ns센터)		전부위탁	○○○○학회 6000	13.11. 1.~ 8.10.	정○○	-	-	-	비공개 (○○○○실)
	국산 공간정보 SW산업 육성을 위한 인증 체계 구축 연구(비공개) -기관운영을 중심으로-	874	자체수행		13.11. 1.~14. 8.31	남○○	-	-	-	비공개
	TOSS와 SIP간 지적확정측량성과 연계 SW 매뉴얼 비공개)	1070	자체수행		1. 1.~ 6.30.	이○○	○			보고서 없이 매 뉴얼만 작성
	공간정보 취득용 GNSS 통합디바이스 개발 (GPS와IMU결합을 통한 GPS차폐 지역내측위성능강화)	1,5785	자체수행		1. 1.~12.31.	이○○	○	○	○	
	LX 위성측위 인프라 고도화 및 시스템 안정화 연구	2,6085	자체수행		1. 1.~12.31.	하○○	○	○	○	

(금액단위: 원)

구 분	연구과제명	예산 금액	수행방법	위탁기관	연구기간	연 구 책임자	연구 심의 · 평가			생략사유
							착수	중간	최종	
정책과제 (13)	통일후 북한지역의 토지권리의 분배방안에 관한 연구	7638	일부위탁	○○대학교 ○○협력단 5960	1. 1.~12.31.	임○○	○	○	○	
	지상라이다측량 표준품셈 산정방식의 고도화 연구 -문화재 적용을 중심으로-	7760	자체수행		3. 1.~11.31.	정○○	○	○	○	
	국제주소 랜더링 표준을 위한 주소체계 분석	5000	자체수행		3. 1.~11.31.	곽○○	○	-	○	
	주요 사업범주 글로벌 경쟁지표 개발	4550	자체수행		3. 1.~11.30.	최○○	-	-	-	비공개 (○○○○○○처)
	해외사업 지원을 위한 컨설팅 툴 제작	0	자체수행		4. 1.~12.31.	송○○	○	-	○	
	도로명주소기본도 기반의 LX 맵 구축 및 서비스 방안 연구	3140	자체수행		5. 1.~10.31.	신○○	-	○	○	
	통일대비 북한지역 국토정보 관리방안 연구(비공개) - 북한지역 지적원도 대지털화 추진방안을 바탕으로 -	1,0000	일부위탁	○○대 ○○협력단 4350	5. 1.~12.31.	김 <u>○</u>	-	-	-	비공개
	대규모 국공유지 디지털지적정리(세계측지계 변환) 구축방안	2600	자체수행		6. 1.~11. 3.	강○○	-	-	-	비공개 (○○○○과)
	고지도상의 독도·동해 표기현황 분석 연구		자체수행		6. 2.~ 8.10.	정○○	-	-	-	비공개 (○○ 지시)
	LX 빅데이터 시범사업 -빅데이터기반의 스마트관광정보 구축	1,0000	일부위탁	(주)○○○○○○ (주)○○○○○ 5650	6.11.~12.10.	배○○	-	-	-	과제관리만 수행 (○○○○단)
	통일을 대비한 외국의 토지등록제도에 관한 연구 -베트남 토지등록제도를 중심으로-	7570	일부위탁	○○○○학회 7147	7.28.~12.24.	임○○	-	-	-	비공개 (○○○○과)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활용한 지적측량 업무량에 관한 연구	7240	자체수행		8.11.~12.30.	최○○	-	-	-	비공개
	지적공부의 공신력 향상을 위한 지목체계 개편(시범사업 포함)방안에 관한 연구	8191	일부위탁	○○○○○○○○학회 6901	8.12.~15. 1.11.	김 <u>○</u>	-	-	-	비공개 (○○○○과)

감 사 권 고

제 목 특근매식비 예산집행 근거자료 기준 미비

관 계 기 관 ○○○○실

내 용

공사는 매년 특근매식비 예산(2015년도 전체 3,205백만 원)을 편성하고 이를 기관별로 배정하여 예산집행지침의 기준으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임직원행동강령」제18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임직원은 출장비·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고 되어있고,

「같은 강령」제32조(투명한 회계관리)에 “임직원은 회계기록 그 밖에 재무관리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고 되어있다.

그리고 「예산집행지침」에 “경상적 경비의 집행을 최대한 절감 및 억제하는 등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복리후생비의 특근매식비는 직원이 초과 근무한 날에 한하여 배정받은 월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고 되어있다.

이에 따라 공사 예산집행은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고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특근매식비 예산은 초과 근무한 날에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사용일과 사용인원 등의 세부 사용 내역 등의 근거자료를 갖추어 집행하는 등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특근매식비 예산 집행의 경우 세부 사용내역 등의 근거자료에 대한 기준이 없어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 실례로 □□□□□□원의 특근매식비 예산 집행은 [붙임 1] 현황과 같이 거래처별 월 사용금액만 있고 사용일과 사용인원 등의 명확한 근거자료 없이 부서별 현원 기준으로 예산 한도액을 전액 결제하고 있다.

따라서 초과 근무한 날에 한하여 집행하여야 하는 특근매식비 예산 사용 목적을 고려해 볼 때 사용일, 사용인원, 금액 등의 세부 사용내역 등의 근거자료에 대한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조치할 사항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장)은 특근매식비 예산이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고 사용목적의 취지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근거자료 등에 대한 내부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특근매식비 집행현황]

(금액단위: 천 원)

사용월	예 산		집 행			비고
	인원	금액	집행액	집행내역	집행방법	
2014. 6월	48	2,880	2,826	◇◇ 468, ◇◇ 1,038, ◇◇◇◇◇◇ 342, ◇◇◇ 978	사용내역 확인 없이 월 사용대금 법인 카드 일괄 결제	
2014. 7월	53	3,180	3,114	◇◇ 606, ◇◇ 918, ◇◇◇◇◇◇ 330, ◇◇◇ 1,080, ◇◇◇ 순대 84, ◇◇설렁탕 96	“	
2014. 8월	48	3,360	3,360	◇◇ 462, ◇◇ 966, ◇◇◇◇◇◇ 508, ◇◇◇ 1,008, ◇◇◇ 순대 40, ◇◇설렁탕 100, ◇◇ 276	“	
2014. 9월	50	3,500	3,500	◇◇ 482, ◇◇ 1,382, ◇◇◇◇◇◇ 532, ◇◇◇ 698, ◇◇설렁탕 100, ◇◇ 286	“	
2014. 10월	50	3,500	3,500	◇◇ 844, ◇◇ 444, ◇◇◇◇◇◇ 616, ◇◇◇ 884, ◇◇◇ 순대 52, ◇◇설렁탕 366, ◇◇ 294	“	
2014. 11월	53	3,710	3,710	◇◇ 480, ◇◇ 1,250, ◇◇◇◇◇◇ 486, ◇◇◇ 934, ◇◇◇ 순대 14, ◇◇설렁탕 278, ◇◇ 198, ◇◇천국 70	“	
2014. 12월	54	3,780	3,780	◇◇ 802, ◇◇ 728, ◇◇◇◇◇◇ 738, ◇◇◇ 752, ◇◇◇ 순대 18, ◇◇설렁탕 368, ◇◇ 304, ◇◇나무 70	“	
2015. 1월	49	3,430	3,424	◇◇ 768, ◇◇ 1,028, ◇◇◇◇◇◇ 446, ◇◇◇ 640, ◇◇◇ 순대 24, ◇◇설렁탕 222, ◇◇ 226, ◇◇나무 70	“	

(금액단위: 천 원)

사용월	예 산		집 행			비고
	인원	금액	집행액	집행내역	집행방법	
2015. 2월	43	3,010	3,080	◇◇ 616, ◇◇ 378, ◇◇◇◇◇◇ 430, ◇◇◇ 968, ◇◇◇ 순대 92, ◇◇설렁탕 306, ◇◇ 220, ◇◇천국 70	사용내역 확인 없이 월 사용액 법인카드 일괄 결제	
2015, 3월	44	3,092	3,092	◇◇ 540, ◇◇ 824, ◇◇◇◇◇◇ 550, ◇◇◇ 510, ◇◇◇ 순대 40, ◇◇설렁탕 268, ◇◇ 360,	“	
2015. 4월	45	3,150	3,150	◇◇ 212, ◇◇ 458, ◇◇◇◇◇◇ 374, ◇◇◇ 1,390, ◇◇◇ 순대 24, ◇◇설렁탕 230, ◇◇ 360, ◇◇식당 70	“	
합 계		36,592	36,536			

* ○○○○부 제외, 특근매식비 사용일, 사용인원 등 세부내역 기록 없음.